

202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C·o·n·t·e·n·t·s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1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31
3. 기준령 조문별 해설	33
II.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지원을	63
1.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지원기준	65
2.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추가지원을	67
III.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69
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	71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예규)	116
3. 자연재난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지침	122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31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33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사유시설·공공시설)	134
V. 관련 규정 및 지침	179
1.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181
2.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185
3.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	187
4. 피해신고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지침	194
5.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 지침	202
6.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08

자연재난 복구 관련 약칭

순번	정식 명칭	약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법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령
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4	자연재난	재난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중앙대책본부회의(심의)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지역대책본부회의(심의)
7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시도대책본부장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시도대책본부회의(심의)
8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시군구대책본부장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심의)	시군구대책본부회의(심의)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령) 31
3. 기준령 조문별 해설 33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2022. 1. 13.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 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 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자금의 용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 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군·구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군·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군·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 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제7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 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 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 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구호금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징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징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나. 이재민 구호 1) 응급 구호 2) 장기 구호	구호물품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지원 100퍼센트(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 기금에서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7일, 반파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30일, 전파되거나 유실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60일간 구호를 한다.
다. 생계비 지원 1) 생계 지원 2)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지원 100퍼센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 편성 기준과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기목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등을 참고하여 지원 금액을 정한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고

-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의 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해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林家) 또는 염생산가로 한정한다.
- 위 표 다목2)의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의 소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요벽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가. 주택 복구			
1) 주택 파손·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용자(주택도시 기금) 70퍼센트 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용자(주택도시 기금) 60퍼센트 (3) 자기 부담 10퍼센트	주택 복구 및 보조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반파(의식주에 필요한 기체구조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소파 또는 반파된 주택이나 침수된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주택의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 주택의 용자비율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주택이 침수된 경우의 피해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6)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7)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2) 주택 침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2) 주택 소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4) 세입자 보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5)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p>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p> <p>1) 농경지 유실·매몰</p> <p>2) 농경지 매입</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p> <p>매입가격</p>	<p>가) 지원 6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p>	<p>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심도(深度)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p>
<p>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p> <p>1) 농림시설 파손·유실</p> <p>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p> <p>가) 대파(代播)대금</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1) 지원 50퍼센트 (2) 용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p>	<p>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가)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기름·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p> <p>(나)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기름·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를 지원한다.</p>
<p>나) 농약 대금</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p>	<p>지원 100퍼센트</p>	<p>농작물·산림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산림작물의 쓰러짐, 낙과(落果) 또는 기름·한파·폭염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p>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p>라. 축산물 증식 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p> <p>1) 축사 파손·유실</p> <p>2) 초지 유실·매물</p> <p>3) 잠실(蠶室) 파손·유실</p> <p>4) 가축 입식</p> <p>5) 누에 유실·폐사</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p> <p>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p>	<p>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 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p>
<p>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p> <p>1)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p> <p>2)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p> <p>3)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p> <p>4)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용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p>	<p>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제외한다.</p> <p>어망·어구의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p>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p>바.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p> <p>1)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p> <p>2) 수산생물 등의 입식</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p>	<p>가) 지원 35퍼센트 나) 용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p> <p>가) 지원 50퍼센트 나) 용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p>	<p>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稚魚)의 가격을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 성어(成魚)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 가격을 지원 할 수 있다.</p> <p>(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p>
<p>사. 공공시설의 복구</p> <p>1) 국가관리 시설 (국도, 철도, 국가 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항항, 항공시설, 국가 어항, 공업용수 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 지정문화재, 국립 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전파관리 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 선박 등)</p>	<p>복구에 드는 금액</p>	<p>국고 100퍼센트. 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p>	<p>가) 17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에 드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한다.</p> <p>나) 자체 설계 및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p>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2) 지방공공 시설 [지방도, 군도(郡道), 농어촌도로, 지방하천, 소하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하천 친수시설 등]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다만, 하천친수시설은 지방비 100퍼센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의 공공 시설			
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소규모 어항,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	복구에 드는 금액	지방비 100퍼센트.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하여 복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70퍼센트 (2) 지방비 30퍼센트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다) 사유림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라) 수산시설 (수산물 유통· 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용자 50퍼센트	
마)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고 100퍼센트	
바) 사립대학교	복구에 드는 금액	(1) 지방비 50퍼센트 (2) 자기 부담 50퍼센트	
사) 사회복지시설	복구에 드는 금액	(1) 국립시설: 국고 100퍼센트 (2) 공립 또는 사설 시설: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시설 시설의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드는 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비고

1. 위 표에서 주택의 침수·소파·반파 및 전파는 각각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3.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4.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5.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6.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 (법 제64조 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법 제61조)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응급복구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마. 제설비용	처리에 드는 자재대 및 장비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제설에 실제로 든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9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비고: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을 말한다.

2. 국고 추가 지원을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8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하천 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 이상	50,000,000	2	49,001~49,500	49,500,000
3	48,501~49,000	49,000,000	4	48,001~48,500	48,500,000
5	47,501~48,000	48,000,000	6	47,001~47,500	47,500,000
7	46,501~47,000	47,000,000	8	46,001~46,500	46,500,000
9	45,501~46,000	46,000,000	10	45,001~45,500	45,500,000
11	44,501~45,000	45,000,000	12	44,001~44,500	44,500,000
13	43,501~44,000	44,000,000	14	43,001~43,500	43,500,000
15	42,501~43,000	43,000,000	16	42,001~42,500	42,500,000
17	41,501~42,000	42,000,000	18	41,001~41,500	41,500,000
19	40,501~41,000	41,000,000	20	40,001~40,500	40,500,000
21	39,501~40,000	40,000,000	22	39,001~39,500	39,500,000
23	38,501~39,000	39,000,000	24	38,001~38,500	38,500,000
25	37,501~38,000	38,000,000	26	37,001~37,500	37,500,000
27	36,501~37,000	37,000,000	28	36,001~36,500	36,500,000
29	35,501~36,000	36,000,000	30	35,001~35,500	35,500,000
31	34,501~35,000	35,000,000	32	34,001~34,500	34,500,000
33	33,501~34,000	34,000,000	34	33,001~33,500	33,500,000
35	32,501~33,000	33,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57	21,501~22,000	22,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61	19,501~20,000	20,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71	14,501~15,000	15,000,000	72	14,001~14,500	14,500,000
73	13,501~14,000	14,000,000	74	13,001~13,500	13,500,000
75	12,501~13,000	13,000,000	76	12,001~12,500	12,500,000
77	11,501~12,000	12,000,000	78	11,001~11,500	11,500,000
79	10,501~11,000	11,000,000	80	10,001~10,500	10,500,000
81	9,501~10,000	10,000,000	82	9,001~9,500	9,500,000
83	8,501~9,000	9,000,000	84	8,001~8,500	8,500,000
85	7,501~8,000	8,000,000	86	7,001~7,500	7,500,000
87	6,501~7,000	7,000,000	88	6,001~6,500	6,500,000
89	5,501~6,000	6,000,000	90	5,001~5,500	5,500,000
91	4,501~5,000	5,000,000	92	4,001~4,500	4,500,000
93	3,501~4,000	4,000,000	94	3,001~3,500	3,500,000
95	2,501~3,000	3,000,000	96	2,001~2,500	2,500,000
97	1,501~2,000	2,000,000	98	1,001~1,500	1,500,000
99	501~1,000	1,000,000	100	300~500	500,000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용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교 수	()고등학교 명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KT []LGU+ []SKT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⑥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감정지원	용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허가·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감정지원	용자신청 여부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3.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간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	예[], 아니오 []	가입자명:	생년월일:
자동차 소유 여부	예[],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등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예[], 아니오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예[], 아니오 []	※ 자연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확인 사항

등일세대 신고 여부	예[], 아니오 []	내용:
다른 시·군·구에 동일한 피해신고를 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	예[], 아니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가족[]이장·통장[]이웃[]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어업권자·양식업권자 (행사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면허(신고·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허가)면적 (ha, m)				어장 위치				
구분	품종별	크기(cm·g)	수량(kg)	마리 수	입식 장소	입식 일자			
입식	계								
그 밖의 사항		수산종자 구입처			전화번호				
구분	품종별	입식 년도	크기 (cm)	수량 (kg)	마리 수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량 (마리 수)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연락처				
		판매처							
사료구입 (확보)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안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매매전표 및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2019. 7. 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50퍼센트를 부담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
4.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부를 부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가 그 부담분 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 기준령 조문별 해설

가. 적용 범위(제2조)

-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예비특보를 발령한 기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대책본부회의 및 지역대책본부장이(자체복구계획 수립 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 1차적으로 피해조사권자가 확인해야 함

나. 용어 정의(제3조)

- ①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주생계수단 확인은 해당 1가구 총 수입액 중 농·어가 수입에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적용
 - ※ 임업, 축산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업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주생계수단 확인 시의 소득금액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근로·사업 소득만을 합산

<주생계수단 세부사항>

- ① 근로·사업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의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 ② 근로·사업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이장확인, 탐문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
 - ③ 1가구: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 ④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란
 -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로 볼 수 없음
3.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생계수단 직접 확인
 - * 매뉴얼 통보: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124(2020.6.22.)호
 - ⑥ 피해자의 직업 등이 변경되어 소득 비교가 어려운 경우 피해사실 및 정황 등을 확인 후 지자체에서 판단결정(증명자료 확인·첨부)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2021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단위: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31,120	44,154	58,948	59,754	59,310	
어가, 염가	28,571	40,863	45,458	57,152	X	

<재난지원금 지급 확인(서식)>

(단위: 천원)

번 호	구 분	성 명	주 민 번호	주 소	은행 명	계좌 번호	총피해금액	총재난지수	지급 금액	연 락 처	지역/ 직장 보험 가입	근로소득		국 민 연 금	지 급 여 부	비 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1	세대주																사업장 명 등
2	세대원																

②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 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기준령 별표3)

③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

④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

⑤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

⑥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

- ⑦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 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
- ⑧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
- ⑨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⑩ 기타

○ 생계지원 대상 판단 시 적용하는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 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동 시설 설치 전체 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 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어선: 피해 어선의 신통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어구: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양식시설: 피해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 면적에 관계없음)

○ 1개소당 피해: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

○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입국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류기간이 제한된 체류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체류자격 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 (제외대상) 불법체류자*, 질병·사고·재난 등으로 긴급 상륙(입국)한 외국인

* (불법체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체류자격·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

다. 지원대상 및 부담기준(제4조)**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용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용자, 주택복구자금의 용자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 면적임

②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③ 그 밖에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제설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행 정 안전부	1.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	○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 100			
	2. 이재민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	-	-
	3. 이재민 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 자는 60일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 자는 30일간 구호 ○ 주택이 침수된 자는 7일간 구호 ○ 주택이 소파된 자는 7일간 구호 ※ 최초 7일간 구호는 사·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지원 100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 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 자전거도로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등)	100 50 50 50 50 1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6. 응급복구 및 제설비용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8.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 도 지 원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농 립 축 산 식품부	1.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관리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6. 초지 유실·매몰	"		70	30	
	7.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간접지원	○ 영농·양축·영어·염생산지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지원			
	12.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100 50 50 70	50 50 30		
해 양 수산부	1. 염전 복구	○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2. 어선	○ 40톤 미만 ○ 40톤 이상	지원35	55 70	10 30	
	3. 어망·어구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지원35	55 70	10 30	
	4. 수산물 증·양식시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5. 수산생물 입식	○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해 양 수산부	6. 공공시설	○ 여항시설 - 국가여항 - 지방, 아촌정주여항 - 소규모여항	100 50 50	50 50		
		○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 수위유량관측소시설 등 해양수산부관리 공공 시설 등	100			
		○ 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일반해수욕장	50	50		
		○ 항만시설 ○ 지정항만(국가관리) ○ 지방항만(지방관리)	100 50	50		
교육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학교시설 ○ 사립대학교시설 ○ 기타 공공시설	100 50	5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 「전통사찰법」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50 100 50 50	50 50		
문 화 재 청	1.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 지방관리문화재 	100 5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100 50	50		
		○ 상하수도시설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광역상수도시설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	10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 도 교통부	1. 사유시설	○ 주택복구	지원30	60	10	
		○ 주택복구(내진설계 반영시)	지원30	70		
	2. 주택침수 및 소파 수리비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3.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제방·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100 50	50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국 토 교통부	3. 공공시설	○ 친수시설(하천기본계획 반영된 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100		
		○ 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마을기반조성	50	50		
		○ 공업용수시설	100			
		○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등	100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산림청	1.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지원100			
	2.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3.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50	30	20	
		○ 농약대 지원	지원100			
	4.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별 도 지 원			
5. 공공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림 - 지자체 소유림 및 사유림	100	50			
		100	50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100	50			
○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10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부 담
경 찰 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여 성 가 족 부	1. 공공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보 건 복 지 부	1. 공공시설	○ 사회복지시설 - 국립시설 - 공립 또는 사설시설(비영리 법인·단체)	100 50	50		

-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 대상에서 제외
-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③ 농림수산시설, 과수목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정하되 철거비 지원 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0.1미만	18억 이상
0.1이상 ~ 0.2 미만	24억 이상
0.2이상 ~ 0.4 미만	30억 이상
0.4이상 ~ 0.6 미만	36억 이상
0.6이상	42억 이상

- 위 기준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있을 때 동일 재난기간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에 미달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기준령 별표3)
 - 또한, 기준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음

마. 국고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제6조)

- ①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중인 건축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 ③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 공공사업 지구 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 ④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
 -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 긴급구호를 위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과 재해로 인한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농약 대는 보험금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어선이나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는 경우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품목 외의 지원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 ⑥ 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 구경 중에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 중인 세월교(잠수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 폭염 및 한파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 각각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 및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을 따른다.

⑦ 하천구역 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하던 중 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⑧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 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바.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제7조)

-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의 경우 1/4)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노력지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하여 차등 지원함
- 국고 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4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4.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6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6억원)×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7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7.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9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9억원)×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10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0.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 추가지원율 = ①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8)+②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2)+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비교: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시·군의 경우: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경우: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 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0.1)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 / 보통세)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 / 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예방사업 투자비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 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평가 결과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가감을 반영대상 및 기준〉

반영대상	가감을 반영기준
① 재난관리평가	· 최우수등급 +5%p, 우수등급 +3%p, · 장려등급 +1%p
②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 최우수등급 +5%p, 우수등급 +3%p, · 장려등급 +1%p
③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	· 상위 15% 해당 +2%p, · 하위 15% 해당 -2%p
④ 침수흔적도	· 미작성 -3%p
⑤ 재해복구사업 점검	· 최상위등급에 해당 +1%p, · 최하위등급에 해당 -1%p
⑥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미수립 -3%p
⑦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 지역의 재난위험도 미반영 -1%p, ·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 미반영 -0.5%p, ·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 미실시 -0.5%p,
⑧ 공공시설물 내진률	· 상위 15% 해당 +2%p, · 하위 15% 해당 -2%p
⑨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 차이에 따라 가. 피해액의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 : -1%p 나. 피해액의 비율이 60% 이상 70% 미만 : -3%p 다. 피해액의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 -5%p ※ 피해액 비율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 100 *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피해 발생시 마다 확인, 해당 재난에 1회 적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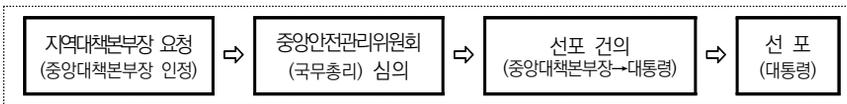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 (제도취지) 대체 복구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 (법적근거) 기본법 제60조(선포) 및 제61조(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범위 및 선포 등) 및 제70조(지원)
- (선포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1/4)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 기준령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선포기준 충족 여부 결정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18억원이상	45억원이상	4.5억원이상	-
0.1이상~0.2미만	24억원이상	60억원이상	6억원이상	전남 담양군 등 65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0억원이상	75억원이상	7.5억원이상	대구 서구 등 6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6억원이상	90억원이상	9억원이상	충북 청주시 등 48개 시·군·구
0.6이상	42억원이상	105억원이상	10.5억원이상	경기 수원시 등 49개 시·군·구

○ 선포절차



- (지원내용)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50~80%)
- (선포사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총 37회 선포

* 우박, 가뭄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없음

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8조)

-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 용자금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도 50% 시·군·구 50%
 - 재정력지수가 0.3~0.9미만인 경우 시·도 40% 시·군·구 60%
 - 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 시·도 30% 시·군·구 70%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대책본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기준령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
 - ※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신고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지원

아.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 장기간 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기간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 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 기정예산,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활용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0% 유보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100% 유보
 - ※ 재난지원금 입금 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e-호조에서 계좌검증을 할 것
 - ※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 등 지급선을 사전지급 하거나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 복수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 피해확정을 먼저 실시한 시·군·구부터 지급함 (상한액 5천만원)
 - ※ 농지 소유자와 소작인과 같은 임차 관계 시 토지는 소유자, 작물은 경작자가 수급하는 것이 원칙임. 단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 결정
 - ※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후 5개월 내 시도대책본부장은 지급의 적정성을 재검증할 수 있다.



자.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제10조)

-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관리 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함

*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복구사업

〈개선복구 대상〉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토지 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우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한 단가를 적용(사유시설은 지원기준지수)하되,
 -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 기준지수 적용
 - 수산증양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공공시설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 건설공사 실시설계비, 감리비 요율을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

(단위: %)

공사비	구 분	실시설계비 * 하천기준	공사감리비	비 고
5천만원 까지			3.02	
1억원까지			2.85	
2억원까지			2.26	
3억원까지			2.06	
5억원까지			1.89	
10억원까지		5.37	1.66	
20억원까지		4.71	1.53	
30억원까지		4.36	1.48	
50억원까지		3.96	1.45	
100억원까지		3.47	1.41	
200억원까지		3.04	1.37	
300억원까지		2.81	1.35	
500억원까지		2.55	1.33	
1,000억원까지		2.24	1.30	
2,000억원까지		1.96	1.28	
3,000억원까지		1.82	1.25	
5,000억원까지		1.65	1.23	

차. 그 밖의 재난복구(제11조)

-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카. 간접지원(제12조)

- 간접지원은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전기·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을 의미함
- 간접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에서 정하거나, 공공기관 등의 실질적인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간접지원은 관계기관(지자체 관련부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처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에 필요한 피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 복합적인 가뭄 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대책본부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파.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제14조)

- 기타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정함

〈간접지원의 종류와 지원기준 현황〉

지원항목		지 원 기 준	관계법령										
①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최장 9개월 연장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장 2년 유예)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5조										
②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득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26조										
③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④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체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자치단체 조례										
⑤	복구 자금 용자	농업 어업 산림	<table border="1"> <tr> <td>농협</td> <td>5년거치 10년상환</td> <td>연리 1.5%(고정)</td> </tr> <tr> <td>수협</td> <td>5년 거치 10년 상환</td> <td>연리 1.5%(고정)</td> </tr> <tr> <td>산림조합</td> <td>5년 거치 10년 상환</td> <td>연리 1.5%(고정)</td> </tr> </table>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고정)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고정)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주택	<table border="1"> <tr> <td>농협 등</td> <td>3년 거치 17년 상환</td> <td>연리 1.5%(변동)</td> </tr> </table>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중소기업 소상공인	<table border="1"> <tr> <td>일반은행</td> <td>2년 거치 3년 상환</td> <td>연리 2.0%(고정)</td> </tr> <tr> <td>중소기업진흥공단</td> <td>2년 거치 3년 상환</td> <td>연리 1.9%(고정)</td> </tr> </table>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⑥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										
⑦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⑧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⑨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⑩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⑫	재해손실 공제 (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기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⑬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⑭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I.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설

지원항목	지 원 기 준	관계법령
㉑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2조의2, 3
㉒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㉓ 공공임대 주거지원 (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㉔ 가전제품 수리 지원 (삼성, LG, 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㉕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㉖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㉗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㉘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㉙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열살·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㉚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 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㉛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시행령 제89조
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우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 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㉝ TV수신료 면제 (방송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㉞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㉟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
㊱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복지)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 ※ 1. ㉑-㉙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지원
2.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음

II.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 추가지원율

- 1.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지원기준 65
- 2.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추가지원율 67

1 지방자치단체별 국고지원기준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 기준	특별재난 지역	지자체별	
			-	-
0.1미만 시군구	피해액 18억원 이상	45억원 이상	-	-
0.10상 ~ 0.2미만	피해액 24억원 이상 (65개 시군구)	60억원 이상	인천	동구
			강원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20상 ~ 0.4미만	피해액 30억원 이상 (66개 시군구)	75억원 이상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금정구
			대구	서구, 남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동구, 남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울산	중구, 동구
			경기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 기준	특별재난 지역	지자체별	
0.40상 ~ 0.60미만	피해액 36억원 이상 (48개 시군구)	90억원 이상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북구
			경기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			
0.60상 시군구	피해액 42억원 이상 (49개 시군구)	105억원 이상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울산	울주군
			세종	세종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 국고추가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시·군	국고 추가 지원율
[서울시]		금곡구	67.4	대곡구	66.4	여주시	64.4	공주시	71.6	구례군	72.2	울진군	69.8
종로구	57.2	강구	52.4	[서울시]		연천군	65.4	보령시	67.4	고흥군	72.6	울릉군	68.6
중구	53.0	연희구	65.0	중구	70.4	가평군	64.6	아산시	56.8	보성군	74.6	[경남도]	
용산구	57.8	수정구	65.0	남구	61.6	양평군	65.6	서산시	65.0	화성군	76.4	창원시	55.6
성동구	60.2	서강구	62.0	동구	69.4	[경기도]		논산시	70.4	장흥군	66.0	진주시	65.0
광진구	60.2	가정동	57.2	북구	64.0	춘천시	66.0	계룡시	64.4	강진군	66.0	통영시	71.4
동대문구	60.2	[대구시]		울주군	57.2	완주시	64.4	당진시	57.0	해남군	70.8	사천시	65.0
중랑구	60.2	중구	65.0	[서울시]		강릉시	66.0	금천군	50.2	영남군	71.6	김해시	57.2
성북구	59.4	동구	64.0	서창시	55.0	동해시	65.6	부안군	67.4	양묘군	66.2	말포시	68.0
강북구	63.2	서구	68.8	[경기도]		태백시	65.6	서천군	67.4	함평군	69.0	거제시	62.0
도봉구	66.4	남구	69.8	수원시	50.0	속초시	64.0	청양군	72.8	영평군	65.6	양산시	55.6
노원구	62.6	북구	67.4	상주시	50.6	삼척시	72.4	홍성군	62.4	장성군	69.0	익산시	79.0
은평구	63.2	수정구	61.6	의령시	59.2	황천군	71.6	예산군	66.0	완주군	64.8	함안군	62.6
서대문구	59.0	달서구	62.6	안양시	54.8	황성군	72.8	태안군	67.4	진도군	71.6	창녕군	71.6
마포구	55.4	달서동	54.2	부천시	57.8	영월군	71.4	[전북도]		산안군	68.0	고성군	69.2
양천구	62.6	[인천시]		광명시	59.8	평창군	73.4	전주시	56.2	[경남도]		남해군	72.2
강서구	62.2	중구	56.8	광주시	56.8	장성군	66.2	군산시	62.8	포항시	62.0	해동군	68.6
구로구	62.6	동구	68.2	동두천시	63.2	철원군	70.8	익산시	64.4	경주시	62.0	산천군	70.6
금천구	62.2	마포출구	66.4	안산시	51.4	화성군	71.0	정읍시	72.8	김천시	64.4	함양군	71.6
영등포구	57.8	연수구	62.2	고양시	56.2	양구군	69.6	남원시	74.4	안동시	70.4	거창군	71.6
동작구	60.0	남동구	61.6	과천시	54.4	안재군	71.4	김제시	69.8	구미시	57.8	함안군	71.6
관악구	63.2	부평구	64.0	구리시	54.2	고성군	69.2	완주군	67.4	양주시	70.4	[제주도]	
서초구	53.0	계양구	63.4	남양주시	59.8	양양군	72.0	진안군	74.6	영주시	66.0	제주도	60.2
강남구	50.6	서구	53.8	안산시	56.8	[충청북도]		무주군	74.4	상주시	68.0		
송파구	55.4	강원군	61.4	시흥시	54.4	청주시	59.6	장성군	71.6	문경시	70.2		
강동구	60.2	웅진동	71.2	군포시	54.2	충주시	63.4	임실군	74.6	간성시	63.0		
[부산시]		[경주시]		의왕시	56.8	재천시	67.4	순창군	74.6	군위군	73.6		
중구	67.4	동구	68.4	해남시	52.0	보은군	71.8	고성군	69.8	양양군	76.8		
서구	66.8	서구	61.6	울진시	54.6	옥천군	71.6	부안군	68.8	창성군	73.0		
동구	64.4	남구	68.0	파주시	68.6	영동군	72.6	[전남도]		영암군	72.6		
영도구	70.4	북구	66.8	이천시	59.8	경동군	66.6	목포시	62.4	영암군	69.6		
부산진구	60.6	광안구	62.6	안성시	62.0	진천군	62.6	여주시	59.0	창성군	72.0		
동래구	62.0	[대전시]		김포시	59.8	과산군	74.6	순천시	63.8	고령군	67.0		
남구	63.0	동구	69.8	화성시	49.6	음성군	62.0	나주시	69.0	성주군	66.6		
북구	64.4	중구	68.8	광주시	62.2	단양군	70.0	광주시	65.0	철원군	69.4		
해운대구	62.2	서구	66.4	영주시	62.2	[충청남도]		담양군	70.8	애양군	68.4		
서해구	62.0	유성구	64.6	포천시	59.6	천안시	60.2	곡성군	72.8	봉성군	71.6		

Ⅲ.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 71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예규) 116
3. 자연재난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지침 122

1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정안전부훈령 제243호

2022. 6. 8.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시·군·구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피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군·구청의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외 시설은 소관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 대장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생계수단 확인 요령) ① 규정 제3조제1호의 주생계수단 확인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되 임가는 농가에 염생산가는 어가에 각각 준하여 적용한다.

② 세대당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소득 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사업소득이 「농·어가 세대당 가계지출 금액」 미만인 세대를 규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의 주생계수단인 세대로 본다.

다만, 주생계수단 확인 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이재민 구호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1) 구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시군구에서 NDMS 입력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 조사 ○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관리지침 참조 ○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 <p>(예) · 약기상이 예상되어 공무원관리인이 등산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버덕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 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14급 이상이 예상될 시 피해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부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 계획 수립·지원.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복구계획 수립·지원 ○ 외국인도 복구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불법체류자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행방불명 포함), 장제비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실종)자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원의 의연금, 성금 등은 장제비로 보아서 안됨 ○ 사망·실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의 구호금(사망·실종자) 단기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구호금(사망실종자) × 지원율 / 1,000 ※ 공무원, 군인 등은 업무와 관련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례비 지급 : 지수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애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4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p>(행안부 고시)의 구호급(부상자) 단가를 지원기준자수로 환산하여 사용</p> <p>※ 지원기준자수 = 구호급(부상자) 단가 / 1,000</p> <p>※ 장애등급 8~14급 지원기준자수는 1~7급 지원기준자수의 1/2로 산정</p> <p>○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애등급 14급 이상 시 구호급을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 담 륜 : 지원 100%</p> <p>○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p>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호는 구호물품으로 지원
(2) 장기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택피해 이재민 확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 제외 - 세입자 보증금을 지원받는 전·월세입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침수·소파 : 7일간 구호비 - 주택 반파 : 30일간 구호비 - 주택 전파·유실 : 60일간 구호비 ※ 최초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 1인 1일당 지원기준지수 지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 지원 10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div>
(3)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1호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을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 지원기준지수 = 생계지원금액 × 지원율 / 1,00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 지원 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영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와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자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 타 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동일 재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수업료)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수 ○ 지원금액: 학자금 고지서의 수업료에 한함 ○ 부 담 료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2. 사유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확 인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동일세대의 중복 신고여부 확인 ○ 동일 자연재난으로 인해 타 시·군·구 신고 및 세대당 5천만원 초과여부 확인 ○ 풍수해보험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는 손해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 지급 ○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의연금 및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조사실시 및 NDMS 등록 ○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해 세무서 등 근로·사업소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지급 시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적극 유도(방문설명 등) ○ 주택 유실·전·반·소파 피해자 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주택까지 지원 	
가. 주택복구		
<p>(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부속 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침수도 동일 적용 ※ 피해조사시 고등학교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피해구분: 전·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의 전파 적용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벽체·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 ·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파손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주택파손 단가×지원율 / 1,000 ○ 반파·소파·침수 주택의 이축·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및 용자금 전액 지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시설은 제외 ※ 피해발생 시·군·구내의 주택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용자비용(60%)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 ※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주택의 반파 적용,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벽체·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 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관사 등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 ※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 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 주택침수도 동일 적용 <p>○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실거주),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p>○ 부 답 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반영 : 지원 30%, 용자 70% - 내진설계 미반영 : 지원 30%, 용자60%, 자부담 10% <p>○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주택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 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관사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의연금 지원은 이사 여부와 무관 ※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 ※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침수 단가를 지원기준 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주택침수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시설은 제외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 가족 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 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주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로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주자에게 침수 주택 수리비를 지급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룰 : 지원 10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3) 주택소파 (지진피해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p>(적용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2mm(500원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한 경우 · 출입문이 틀어져 개폐가 되지 않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 청문틀이 떨어지거나 뒤틀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붕재(기와 등) 탈락으로 2㎡ 이상을 재설치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소파 단가를 지원 기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지수 = 주택소파 단가×지원율 / 1,00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하여 지원. 단,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시설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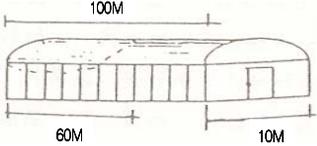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 타일 탈락,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 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범시설, 태양광(열)시설 등 부속물 파손 <p>○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p> <p>※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는 의연금 지급을 위해 조사 필요</p> <p>※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하여 의연금은 모두 지원</p> <p>※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 지원,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의연금 미지원</p> <p>○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p> <p>※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이라 함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함.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 있는 집은 빈집이라 할 수 없음 	<p>※ 소유자에게 지급</p> <p>※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p> <p>※ 회계연도내에 수리하지 않고 재피해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 담 룰 : 지원 100%</p> <p>○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세입자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 반파전파 또는 유실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함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부모의 집 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 ※ 피해 조사 시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안부 고시)」의 세입자 보조 단가 범위 내 실제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재년 지수로 환산한 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 세입자보조 단가×지원을 / 1,000 〈세입자 보조금 지원기준지수 산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200×6개월=1,200 적용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300×6개월=1,800 적용 - 보증금 없이 월10만원 세입자 ⇒ 100×6개월=600 적용 ※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재년지원지수 3,000을 적용하면 부당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호에 따라 주택 보증금의 이자 등을 지원 받은 경우 6개월분 지원액을 공제하고 지급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 지원 10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div>
(5) 마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지구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는 지자체, 피해주민 등이 부담 하고, 마을기반 조성비만 계상 ○ 주택 이축비는 전파주택 기준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농경지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년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 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 현지를 답사 필자별로 조사하되 매몰과 유실로 구분조사 ○ 매몰면적 : 매몰심도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유실면적 : 유실깊이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 ○ 농경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는 매입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 협의·결정하여 지급 ○ 농경지의 경우 대규모 피해지역은 가능한 소규모 경지정리방식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경지정리지구로 책정 병행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 m^2 면적으로 계산함 - 매몰 : 매몰면적(m^2)\times(지원기준지수) - 유실 : 유실면적(m^2)\times(지원기준지수) ○ 실매입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국고 50%, 지방비 5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60%, 용자30%,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다.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p>가) 비닐하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조제5호 준용 ○ 단순 비닐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한 「원예특작 시설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 ○ 유리온실은 파손된 유리면적만 산정하여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p> <p>* 표준설계규격 :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보급·지도용으로 개발·보급한 하우스 시설규격</p> <p>- 피해구분은 비닐하우스(온실포함) 전체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아래와 같이 전파 및 반파로 구분조사</p> <p>※ 예시</p>  <p>· 피해면적=60m×10m=600㎡ 주요) 100m×10m=1,000㎡ 아님</p> <p>- 전파 : 피해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 매몰된 경우</p> <p>- 반파 : 피해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p> <p>○ 피해액=피해면적 × 피해단가</p>	<p>○ 재난지수 산정방법</p> <p>- 피해면적(㎡)×시설별 지원 기준 지수</p> <p>-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 × 당해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p> <p>※ 피해 복구대상면적 적용시 1개동의 일부분만 피해를 입은 경우 1개동 전체면적을 복구대상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부 담 륜</p> <p>-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p> <p>○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p>나) 인삼재배 시설</p>	<p>○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p> <p>○ 표준설계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p> <p>* 표준설계규격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한 인삼 재배시설 규격</p> <p>○ 시설형태별의 A형, B형으로 구분 조사</p>	<p>○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한 「원예특작 시설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복구계획 수립</p> <p>○ 재난지수 산정</p> <p>- 피해면적×시설유형별 지원 기준지수</p> <p>-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지원 기준지수의 1/2 적용</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목 등 자재의 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의 경우 1/2적용) - 피해면적 : 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 부분 면적만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p>다 벚섯 재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 병벚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 조사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p>라 과수재배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준영구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시설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 미만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는 1/2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 시설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 기준지수의 1/2적용 ○ 부 담 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p>바 농산물 건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 용도 일치 여부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물량(톤)×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물량(톤)× 당해 시설지원기준지수의 1/2 적용 ○ 부 담 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사) 표고 배설재 시설</p>	<p>○ 시설은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배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표고배배사(통법배지 표고양묘)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 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 매몰된 경우 <p>※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p> <p>※ 표고배배시설 신규모델규격('10년 이후 규격 모두)에 맞지 않은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검색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제목 체크 후 "표고배배" 검색)</p> <p>※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산정 방법 준용</p> <p>※ 누락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 조치하여야 함</p>	<p>○ 재난지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배배사 : 피해면적×표고 배배사 지원 기준지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부 담 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p>○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div>
<p>아) 대추 비가림 시설</p>	<p>○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로 구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피해정도 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 시설이 70%이상 파손 및 유실 · 매몰된 경우 · 반파 : 시설이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 · 매몰된 경우 <p>※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p> <p>※ 내재해형 시설로 지자체 보조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p> <p>※ 누락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p>	<p>○ 재난지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추비가림 : 피해면적 × 대추비가림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부 담 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p>○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div>
<p>재) 유의사항</p>	<p>○ 과수목 반침대, 포도주 등 임시 가시설물은 제외</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p>가) 농작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음 ○ 피해조사 시 가족 및 고등학생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농작물은 피해 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 시 우선 잠정 보고하고, 재난 피해조사단의 피해 확정 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보고 ○ 농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p>※ 누락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조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보리 등 일반작물 : 일반작물 지원기준 지수 적용 ○ 채소 : 과채류, 엽근채류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지수 적용 ○ 인삼 : 묘삼기준 연근별 지원기준지수 적용 ○ 과수 :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파대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나) 산림작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면적만 조사하고 피해액은 산출하지 않음 ○ 중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재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 ○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임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정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정수 피해조사에서 제외 ※ 분재는 포지 재배 피해면적만 조사 ※ 누락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 조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작물을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산림작물별 지원기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자목 : 중균대 및 자목대 - 잔디 : 파종생산비 지원기준지수 - 조경수, 분재, 밤, 대추, 뽕은감, 호두, 은행, 약용류, 복분자, 머루, 다래 : 지원기준지수 - 야생화 : 종자대 및 비로대 지원기준지수 -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산양삼, 약초류 : 종자대 지원기준지수 - 표고톱밥배지 : 중균대 지원기준지수 ② 농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작물의 낙과·낙엽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병해충방제별 지원기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방제(산채류) - 병해충방제(수실류) -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 병해충방제(약용류) - 병해충방제(야생화) - 병해충방제(표고버섯)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파대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② 농약대 : 지원100% ○ 소관부처 : 산림청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및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유무 확인 ○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종류 : 한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보온덮개형 축사 - 피해액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 1/2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축사유형별 지원 기준지수 ○ 축사 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답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2) 축사부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종류별, 규모별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처리시설의 종류 : 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오리(평사) 분뇨처리시설 ○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및 사육형태에 따라 규모별로 복구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업비 단가가 축종별 분뇨처리시설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 ○ 재난지수 산정 : 피해면적×분뇨처리시설지원 기준지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3) 초지유실매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한 초지의 유실·매몰 피해 ○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 ○ 조성방법(경운초지,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별로 조사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피해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초지조성별 지원기준지수 ○ 초지조성방법 및 규모별로 구분 복구 계획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4) 잠실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된 잠실로서 반파는 건물 평수와 파손 비율에 따라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의 종류별로 구분조사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피해단가 (반파는1/2 적용) ○ 재난으로 인한 잠사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잠실종류별 지원 기준지수 ○ 잠실종류별 규모별로 복구계획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35%, 용자55%, 자부담1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5) 가축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한 축사의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 피해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폐사 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 폐사 가축 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 촬영 후 매장 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 확인조서 작성 - 현지 조사 시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 하였을 경우,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표를 지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사수×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 가축 지원기준지수 ※ 기준단가가 없는 축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한 후 적용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조사대상 : 마필, 양, 사슴, 펴 등) - 표본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실시하는 가축의 통계조사 (조사대상 : 한우, 젃소, 육성우, 돼지, 닭) - 기타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사육현황 및 실태조사 내역서 확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종별, 육성축 미만·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p>○ 평은 사단법인 대한고려평협회 및 지사의 회원별 사육현황 및 시·군임업협동조합의 평사육지원 관계서류와 사육자의 평, 병아리 구입계산서를 근거로 피해물량을 산정</p>	<p>○ 가축의 종류별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육성가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55 327 980 502"> <thead> <tr> <th rowspan="2">축 종</th> <th colspan="2">육 성 축 기 준</th> </tr> <tr> <th>일(월)령</th> <th>체 중</th> </tr> </thead> <tbody> <tr> <td>소</td> <td>12개월령이상</td> <td>250kg이상</td> </tr> <tr> <td>돼 지</td> <td>120일령이상</td> <td>60kg이상</td> </tr> <tr> <td>육 계</td> <td>20일령이상</td> <td>600g이상</td> </tr> <tr> <td>산란계</td> <td>70일령이상</td> <td>850g이상</td> </tr> </tbody> </table> <p>※ 농가의 사양관리기록부에 의거 입식 연월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당시 일(월)령 또는 체중 (사양관리기록부 미비 시) 확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 담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p>○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div>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축 종	육 성 축 기 준																		
	일(월)령	체 중																	
소	12개월령이상	250kg이상																	
돼 지	120일령이상	60kg이상																	
육 계	20일령이상	600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850g이상																	
<p>(6) 누에 유실·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 -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음 - 피해량은 잠수에 따라 무게(kg)로 표시 ○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 후 피해량 산정 	<p>○ 재난지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또는 폐사량(kg)×봄·가을누에 지원 기준지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 담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50%, 용자30%, 자부담20% <p>○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마. 어선 및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인하여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 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 - 1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를 필하였거나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장(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 ※ 미등록 어선 및 원양어선, 외국선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톤수는 신통수를 적용하고 구톤수는 신통수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통수 = 구톤수 × 0.72 ○ 동력,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톤수, 척수조사 ○ FRP, 목선, 강선으로 구분하되, FRP를 피복한 경우에는 목선 및 강선으로 조사 ○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을 기재하고 선박 대장을 첨부 ○ 유실·침몰된 어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시 해경 경위 조치 ○ 전파 : 어선의 용골 등 선체가 손상·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완전히 소실되어 새로 건조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침몰·유실의 경우에는 어선의 형태가 확인 되어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하다면 반파로 함 ○ 반파 : 어선의 용골 등 선체가 손상·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반파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음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어선톤수(신통수) × 어선종류별 톤당 지원단가(반파는 1/2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어선의 톤수(신통수기준)×어선 종류별 톤당 지원기준 지수(반파는 1/2적용)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어선은 제외 ○ 어선 피해를 입은자가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톤미만어선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40톤이상 어선 및 기타 선박 :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피해 어선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폐선인지 확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으로 공해상에서 어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피해 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 · 피해 발생 시·군은 피해장소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시·군으로 할 것 · 복구계획은 어선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인명 피해(선원)는 주소지 시·도지사가 수립 보고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어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당해연도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 ○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 조사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반파: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 수리 하면 어업이 가능한 상태로써 전체 시설 대비 백분율로 판단 ○ 면허·허가·신고대상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규모와 일치하는지 조사 ○ 어업권자와 피해 어업인 일치여부 확인 ○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가 맞는지 확인 ○ 당해연도 설치한 자재인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어구 종류별 건조 지원기준지수 (반파는 1/2적용) ○ 어망·어구 종류별 지원가격 6천만원 미만 복구계획서 작성 ○ 어망·어구복구는 선적지 시·도지사가 복구 계획 수립보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건조가격 6천만원이상: 용자 70%, 자부담 30%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바. 수산물 증·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생물 입식																																																						
<p>(1)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협, 조항,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 (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 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당 표준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양식 시설별 어업권자와 피해 어민의 일치 여부 확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 (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 또는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어장의 행사자 수와 개인별 행사면적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로 피해단가 적용(가두리시설의 반파는 1/2적용, 타시 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하고 행사자별로 피해물량을 산정 - 반파기준은 어망·어구와 같음 ※ 해조류 피해복구산정기준액 월별 차등 적용 요율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p> <table border="1" data-bbox="303 1166 639 1262"> <thead> <tr> <th>구분</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75</td> <td>67</td> <td>58</td> <td>50</td> <td></td> <td></td> <td></td> <td>50</td> <td>100</td> <td>92</td> <td>83</td> <td></td> </tr> <tr> <td>미역</td> <td>88</td> <td>76</td> <td>63</td> <td>50</td> <td></td> <td></td> <td></td> <td></td> <td>100</td> <td>100</td> <td></td> <td></td> </tr> <tr> <td>다파</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70</td>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파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 피해액과 같음 ○ 수산증양식시설은 복구전에 재질, 규격 등에 대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확정·지원된 복구비 이상으로 양질의 내파성 재질로 감수(減數)복구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확정 복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장이용개발 계획 기본자침(해양수산부, “상습 재해피해에 대한 신규 및 재개발 어장” 규정) 참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김	75	67	58	50				50	100	92	83																																											
미역	88	76	63	50					100	100																																												
다파	100	100	100	100	90	70	50	40	30	20	100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2) 수산 증·양식 부대 시설의 파손·유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를 방문 피해사실 여부 확인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 첨부 ○ 어업권자와 부대시설피해 어업인과의 일치 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 지수를 적용 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 (가두리 시설의 반피는 1/2적용, 타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 적용) ○ 지원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용 시설에 한하여 조사하고, 금번 피해 시설인지 종전부터 방치된 시설인지 확인 - 수산물 증·양식시설과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수산생물에 대해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산물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p>(3) 수산생물 등의 입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증·양식시설 면허대상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 판매량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고 가능 ○ 유실인 경우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 확인,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치 ○ 피해 해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 (성어, 중간어, 치어)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종류별 지원기준지수 × 피해수량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표준사육기준 : 해상가두리)</p> <p>* 기준 : 가두리 가로5m×세로5m×깊이5m/대 (cm, g)</p> <table border="1" data-bbox="296 331 641 646"> <thead> <tr> <th rowspan="2">어종별</th> <th colspan="3">치 어</th> <th rowspan="2">종가어</th> <th colspan="2">성 어</th> </tr> <tr> <th>크기 (미만)</th> <th>소요 기간</th> <th>최대 수용마리수</th> <th>크기 (세종 이상)</th> <th>소요 기간</th> <th>최대수용 마리수</th> </tr> </thead> <tbody> <tr> <td>외괘물·농어</td> <td>13</td> <td></td> <td>16,300</td> <td>10,500</td> <td>26(350)</td> <td>4,800</td> </tr> <tr> <td>참돔·강동돔</td> <td>13</td> <td></td> <td>14,100</td> <td>9,100</td> <td>26(350)</td> <td>4,200</td> </tr> <tr> <td>물돔</td> <td>10</td> <td>양서류</td> <td>14,100</td> <td>9,400</td> <td>20(200)</td> <td>4,000</td> </tr> <tr> <td>민어·농어</td> <td>15</td> <td>3개월 이내</td> <td>20,000</td> <td>12,000</td> <td>30(500)</td> <td>4,000</td> </tr> <tr> <td>불락</td> <td>8</td> <td>8 (연)</td> <td>25,000</td> <td>20,000</td> <td>16(150)</td> <td>15,000</td> </tr> <tr> <td>병어</td> <td>10</td> <td>병어</td> <td>25,000</td> <td>13,000</td> <td>20(200)</td> <td>5,000</td> </tr> <tr> <td>송어</td> <td>15</td> <td>2개월</td> <td>15,000</td> <td>10,500</td> <td>30(500)</td> <td>6,200</td> </tr> <tr> <td>남치</td> <td>15</td> <td></td> <td>20,000</td> <td>6,000</td> <td>30(500)</td> <td>2,000</td> </tr> <tr> <td>취치</td> <td>10</td> <td></td> <td>14,000</td> <td>8,400</td> <td>20(130)</td> <td>4,000</td> </tr> <tr> <td>황박</td> <td>10</td> <td></td> <td>20,000</td> <td>12,000</td> <td>20(250)</td> <td>5,000</td> </tr> <tr> <td>노래미·고동어·전갱이</td> <td>13</td> <td></td> <td>15,000</td> <td>10,000</td> <td>26(200)</td> <td>5,000</td> </tr> </tbody> </table> <p>※ 어류 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p> <p>※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치어에 한하여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고, 기층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p> <p>○ 피해 내수면어류의 종류별, 크기별로 성어 및 치어로 구분 조사</p> <p>〈내수면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303 938 636 1145"> <thead> <tr> <th rowspan="2">어종별</th> <th rowspan="2"></th> <th colspan="3">성어의 크기</th> </tr> <tr> <th>전장(cm)</th> <th>체중(g)</th> <th>소요기간(월)</th> </tr> </thead> <tbody> <tr> <td>송</td> <td>어</td> <td>30</td> <td>500</td> <td>14</td> </tr> <tr> <td>잉</td> <td>어</td> <td>32</td> <td>1000</td> <td>22</td> </tr> <tr> <td>뱀</td> <td>어</td> <td>25</td> <td>200</td> <td>16</td> </tr> <tr> <td>창</td> <td>어</td> <td>30</td> <td>1000</td> <td>22</td> </tr> <tr> <td>황</td> <td>어</td> <td>30</td> <td>1000</td> <td>22</td> </tr> <tr> <td>가</td> <td>물</td> <td>45</td> <td>2000</td> <td>36</td> </tr> <tr> <td>매</td> <td>기</td> <td>20</td> <td>200</td> <td>5</td> </tr> <tr> <td>틸</td> <td>라</td> <td>22</td> <td>1000</td> <td>14</td> </tr> <tr> <td>은</td> <td>어</td> <td>22</td> <td>50</td> <td>5</td> </tr> <tr> <td>미</td> <td>구</td> <td>11</td> <td>10</td> <td>14</td> </tr> <tr> <td>자</td> <td>라</td> <td>13</td> <td>500</td> <td>15</td> </tr> <tr> <td>산</td> <td>천</td> <td>25</td> <td>250</td> <td>12</td> </tr> </tbody> </table> <p>※ 큰고기의 소요기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p> <p>※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p> <p>○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p> <p>○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 입식장소·품종 및 수량, 중요살포(입식)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p>	어종별	치 어			종가어	성 어		크기 (미만)	소요 기간	최대 수용마리수	크기 (세종 이상)	소요 기간	최대수용 마리수	외괘물·농어	13		16,300	10,500	26(350)	4,800	참돔·강동돔	13		14,100	9,100	26(350)	4,200	물돔	10	양서류	14,100	9,400	20(200)	4,000	민어·농어	15	3개월 이내	20,000	12,000	30(500)	4,000	불락	8	8 (연)	25,000	20,000	16(150)	15,000	병어	10	병어	25,000	13,000	20(200)	5,000	송어	15	2개월	15,000	10,500	30(500)	6,200	남치	15		20,000	6,000	30(500)	2,000	취치	10		14,000	8,400	20(130)	4,000	황박	10		20,000	12,000	20(250)	5,000	노래미·고동어·전갱이	13		15,000	10,000	26(200)	5,000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cm)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뱀	어	25	200	16	창	어	30	1000	22	황	어	30	1000	22	가	물	45	2000	36	매	기	20	200	5	틸	라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25	250	12	<p>○ 지원기준지수</p> <p>- 패류, 해조류, 기타류: 종묘대 지원기준지수</p> <p>- 어류 : 치어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확정된 성어의 1/2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어장의 환경변화로 피해재발 소지가 있거나 계절적, 수온, 어종품귀, 기타의 사유로 피해어종의 입식이 불가할 때에는 복구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어종으로 대체 입식할 수 있음</p> <p>※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면양식의 성어"라 함은 표준사육기준표상의 크기의 성어를 말하며, 지원단가 산정 시 성어는 성어의 1/2값을, 중간어·치어는 치어값을 적용함</p> <p>○ 부 담 료</p> <p>- 지원 50% 용자 30% 자부담 20%</p> <p>○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p>
어종별	치 어			종가어	성 어																																																																																																																																																											
	크기 (미만)	소요 기간	최대 수용마리수		크기 (세종 이상)	소요 기간	최대수용 마리수																																																																																																																																																									
외괘물·농어	13		16,300	10,500	26(350)	4,800																																																																																																																																																										
참돔·강동돔	13		14,100	9,100	26(350)	4,200																																																																																																																																																										
물돔	10	양서류	14,100	9,400	20(200)	4,000																																																																																																																																																										
민어·농어	15	3개월 이내	20,000	12,000	30(500)	4,000																																																																																																																																																										
불락	8	8 (연)	25,000	20,000	16(150)	15,000																																																																																																																																																										
병어	10	병어	25,000	13,000	20(200)	5,000																																																																																																																																																										
송어	15	2개월	15,000	10,500	30(500)	6,200																																																																																																																																																										
남치	15		20,000	6,000	30(500)	2,000																																																																																																																																																										
취치	10		14,000	8,400	20(130)	4,000																																																																																																																																																										
황박	10		20,000	12,000	20(250)	5,000																																																																																																																																																										
노래미·고동어·전갱이	13		15,000	10,000	26(200)	5,000																																																																																																																																																										
어종별		성어의 크기																																																																																																																																																														
		전장(cm)	체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뱀	어	25	200	16																																																																																																																																																												
창	어	30	1000	22																																																																																																																																																												
황	어	30	1000	22																																																																																																																																																												
가	물	45	2000	36																																																																																																																																																												
매	기	20	200	5																																																																																																																																																												
틸	라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25	250	12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사. 염전 복구		
(1) 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몰면적 : 매몰심도를 10cm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 염전으로 함 - 유실면적 : 유실깊이 20cm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함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을 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염전을 가동하지 않은 염전 ·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 되는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 및 매몰비 지원 기준 : 농경지 복구기준에 의하여 지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60%, 용자 30%,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2) 염생산 저장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생산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실·매몰 :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면적(㎡)×지원기준지수 - 반파 시 당해시설 피해면적×당해 시설 지원기준지수의 1/2적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담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35%, 용자 55%, 자부담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아. 기타(공장, 광산, 소상공인 등)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광산(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 확인 -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 내 피해를 말함 ○ 피해액은 영업 결손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 피해액을 제외한다. ○ 재난지원금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중소기업부장관이 관련기금 또는 용자로 지원하되 부담률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함 ○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 「재해구호법」 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 : 중소기업부에서 관리, 시·도에서 지원 </div>
자. 기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훈령에 없는 피해조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규정, 예규, 훈령, 지침 등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공공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일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시설 별로 조사 하고 개소별로 피해액을 산정 ○ 항구복구계획과 상관없이 순수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물량 및 피해 금액 산정 ○ 하천 내 하상퇴적으로 통수단면이 감소 한 경우 퇴적토량을 계상 ○ 세부공종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재해 대장에 기재 또는 별지로 첨부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에서 정한 피해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 지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 도로대장, 하천기성제 대장 및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참조하여 관리등급 등을 조사하고 피해확인이 애매모호한 시설은 시설물 관리대장에 재해대장에 첨부 ○ 피해전경을 가능한 자세히 촬영하여 향후 기록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제방 피해 등 피해연장이 긴 지구는 가능한 연속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필요시 드론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피해 조사 등에 활용 가능 ○ 공사 하자기간 내 시설물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피해 현지조사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여 사전에 별도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서지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운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6장 안전점검 등의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이 불기한 경우 시설물 규모에 따른 직선 보간법, 견적 등을 활용하여 산정 ○ 하상 퇴적 시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한 준설비 계상 ○ 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계획이나 지구 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p>〈 개선복구계획 수립 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 피해액 선정</p> <p>- 시설별 세부공종별 피해물량 × 기준 단가</p> <p>※ 특히, 복구소요에 필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대공, 자재대, 부과세, 관리비, 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으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p>	<p>②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 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p> <p>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p> <p>④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수지 설치 등 홍수자류대책이 필요한 시설</p> <p>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p> <p>⑥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에서 결정된 시설 등</p> <p>〈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 대상 〉</p> <p>①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p> <p>②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 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p> <p>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p> <p>④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⑤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 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역</p> <p>○ 개선복구지구단위종합복구 대상지구는 별도 설명 자료 작성</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참조 ○ 복구공법 선정은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경제성 및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국가관리 공공시설중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지구는 다음연도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처에서 다음연도에 별도지원 대책 강구 ○ 재원부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공공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 공공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기타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시설, 시 관내도로(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외) : 지방비 100%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수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한국농어촌공사시설, 수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유림 : 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시설 : 국고 50%, 용자 50% · 국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 국고 100% · 사립대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 시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div> ○ 복구금액이 "0"인 시설은 피해금액도 "0"으로 본다 ○ 복구비 산정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물량×시설공종별 단가 - 기준단가는 자연재난복구 비용산정 기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기준에 없는 공종은 우선 유사 공종을 적용하고 그 다음 물가정보나 설계 및 견적 가격을 적용 - 개선복구계획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시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계상, 복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토지보상비 산정은 지역별 공시지가에 지역별 공시지가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정 -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및 공사 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선복구·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이 아니라도 피해 시설별지역별로 설계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100% 지원 ※ 용역비 적용요율 :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 지침 참조 ※ 소규모시설 단가 적용 시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가) 토지보상비 산정 방법										
○ 지역별 용도지역·이용상황 보상배율을 적용한 보상비 산정(「예비타당성조사 공시지가 보상 배율 개정 연구」(2021, 기획재정부)										
- 산식 : 복구사업 편입 면적(㎡) × 대상 필지 공시지가(원/㎡) × 지역별 공시지가 보상배율*										
* 보상배율(γ_i) = [용도지역보상배율(α_i) + 이용상황보상배율(β_i)]/2										
지역	보배율	용도지역 보상배율(α)				이용상황 보상배율(β)				
		주거상업 공업	복자 개택한	관리	농림자연 환경보전	주용 공용	상업 장학특용	전답	임야	공공타
서울	1.66	1.59	1.84			1.23	1.52	1.29	2.77	3.66
부산	1.90	1.87	1.93			1.86	1.61	1.90	3.00	3.90
대구	2.05	1.90	2.18	2.90	2.78	1.92	1.57	2.05	3.89	4.89
인천	2.10	1.66	1.77	3.13	2.36	1.66	1.11	2.16	2.64	3.89
광주	2.13	1.54	2.71	2.57		1.54	1.31	2.18	2.80	3.28
대전	1.59	1.59	1.83	2.00	3.00	1.59	1.57	1.60	2.59	3.81
울산	2.78	2.09	3.04	2.82	3.00	1.91	1.88	2.45	5.00	4.44
세종	2.87	2.55	2.79	3.33	2.75	2.34	2.04	2.70	5.11	4.16
경기	1.85	1.49	1.92	2.08	2.01	1.63	1.57	1.77	2.70	2.88
강원	2.44	1.89	2.65	2.71	2.68	1.90	1.64	2.38	4.46	4.62
충북	2.35	1.37	2.38	2.88	2.61	1.74	1.56	2.31	3.07	5.20
충남	2.49	1.93	2.54	2.96	2.39	2.04	1.63	2.33	3.58	4.06
전북	2.15	1.82	2.22	2.61	2.09	1.95	1.69	2.11	3.42	4.25
전남	2.50	2.03	2.75	2.62	2.47	2.17	1.72	2.40	4.50	5.00
경북	2.64	2.24	2.52	2.99	2.54	2.10	1.82	2.52	4.50	5.31
경남	2.73	1.96	3.08	3.13	2.62	2.13	1.80	2.70	4.50	4.17
제주	2.17	1.73	2.22	2.60	2.71	1.69	1.50	2.43	3.10	4.11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나. 부처별 시설복구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시설		
(1)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시설 대상 : 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 취입보, 양·배수장 등 수리 시설물 관리 대장에 있는 시설에 한하여 조사 ○ 관리청별 구분조사(국가, 지방) ○ 농업용이 아닌 취입보, 도시배수펌프장, 하천 배수문은 제외 ○ 시설 방조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피해액은 세부공종별 피해물량을 산정하여 공종별 기준단가를 적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공종별 복구물량×기준단가 ○ 양배수장 침수로 인한 전기, 기계류 피해 복구비는 수리비만 산정하여 복구계획 수립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div>
나) 해양수산부 소관시설		
(1) 여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항시설의 방파제 물양장 등 부대시설 대상 ○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법정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지방어항 : 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 -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소규모 항포구 : 법정어항을 제외한 마을단위로 이용하는 항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 복구비 산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국가어항)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국고 50%, 지방비 50% ※ 자치단체관리 소규모 항포구 : 지방비 100%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점검 이력대장, 여항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표지시설, 도선장, 물양장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 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2) 항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상 지정항만 내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시설물 대상으로 조사 ○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항: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연안항: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 항만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및 공사대장 등을 참조하여 피해조사 ○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표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공종별로 조사 ○ 설계조건 및 시설물 시공상 하자여부 등을 조사 ○ 피해액 산정은 세부 공종별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항만 기본계획(무역항, 연안항)이 수립된 지구는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 시설별, 공종별로 복구물량을 산출하여 복구비 산정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무역항, 연안항): 국고 10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다) 국토교통부 소관시설</p>		
<p>(1) 도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국도 및 도로 표지판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단순 균열피해는 제외 ○ 노후 교량은 금회 피해 진위여부 확인 ○ 피해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은 피해 경간 및 교각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전체를 계상하지 말 것 - 적용단가 중 피해규격과 다른 경우는 m² 등으로 가감 환산 적용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교량의 경우 노폭, 교량폭, 가설연도, 재해재발여부, 주민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도로 포장공법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복구비가 저렴한 공법 선택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 국고 100%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농복합형태 시 중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군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함
<p>(2) 철도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법」에 의하여 설치된 궤도, 도상, 독, 노반 등과 그 부대시설 ○ 선로평면도, 공사대장, 교량카드 등을 참조 조사 ○ 철도공단 관리시설 피해만 선별, 위치, 연장을 측정하고 피해 종류별로 수량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계획은 시설피해에 한하여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사업성 복구비는 철도공사 자체예산에 편성 시행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 국고 100% - 지방관리 : 국고 50%, 지방비 50%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라) 행정안전부 소관 시설		
(1) 도로시설	<p>○ 「도로법」상 인정·공고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도로 표지판 등 부대시설이 재난으로 파손·유실된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p>	<p>○ 복구비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 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 : 지방비 100% • 광역시의 구 및 알란시 관내 등 지역의 도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지방비 100% • 읍면지역은 국도는 국고 100%, 지방도 및 시도는 국고 50%, 지방비 50%
(2) 농어촌 도로	<p>○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공고된 도로를 대상</p> <p>○ 국토교통부 도로피해 조사와 같음</p> <p>※ 피해 보고 시는 행정안전부 도로에 포함</p>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3) 자전거 도로	<p>○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한 도로를 대상</p> <p>※ 하천 부지 내 시설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p>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4) 소화전	<p>○ 「소화전정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소화전의 제방, 수문 등에 대해 조사 실시</p> <p>○ 낙차공, 소규모 간이취입보도 포함</p>	<p>○ 호안은 자연친화형 공법을 적용</p> <p>○ 하폭이 협소한 곳은 가능한 자연 상태로 두고 인접 토지 매입방법을 강구하여 복구계획 수립</p> <p>○ 옹벽, 찰쌓기 호안은 피하고 자연 친화형 하천이 되도록 계획</p>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5) 지방관리 공공건물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p> <p>※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가입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임 ·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 시설은 조사 	<p>○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p> <p>○ 다만 건물이 아닌 축대 등 부대시설은 지원</p>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6)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복구계획 수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피해조사는 현지 답사 후 피해시설별로 조사하고 하나의 재해대장에 통합하여 작성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피해조사 개념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시 피해액 산정은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 피해유형, 수계유역, 임야(능선)하천도로, 행정구역 등 감안하여 지구경계 설정 - 도로·하천 등 피해시설별 소관 부처가 상이 하더라도, 일괄 복구를 위해 시설물간 연계성, 방재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구계획 수립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복구계획 수립 개념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 ○ 수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서 작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요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를 거쳐 복구계획 심의확정 전까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 수리시설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이 포함될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적용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7) 소규모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준용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개선복구계획 수립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 지방비 100% </div>
(8) 기타 소규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비법정 소화전, 농로, 소교량, 기타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준용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복구계획수립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 지방비 100% </div>
<p>마) 환경부 소관시설</p>		
(1)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시설, 하수·폐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 ○ 인가대장, 관리대장,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조사 ○ 취수시설, 취수장, 관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부대시설별로 피해물량과 금액을 산정하되, 전기·기계 시설은 수리비만 계상 ○ 홍수통제소에서 설치한 수위·우량관측 시설 피해액 산정은 설치 당시 사업비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의 토사유입 매몰에 따른 준설 피해는 복구계획 대상에서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광역상수도 : 국고 100% - 수위·우량관측시설 : 국고 100% </div>
(2) 공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시도립공원 구역 내의 피해시설 대상 ○ 국립공원 시설피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 조사 <p>※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설치·관리 지역과 일반 산림 지역의 산사태 구분 조사</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 국립공원 : 국고 100% - 시·도립공원 : 국고 50%, 지방비 50%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3) 하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하천별로 조사 ○ 제방 축제·호안·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부속물 전체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 ○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한 친수 시설에 한하여 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시설 :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 하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시설은 피해조사 제외 ○ 국가하천과 접한 하천의 제방은 국가하천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 등 매입대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 시는 전체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확폭으로 인한 용지매수 필요 시 용지매입비를 계상 - 이수·치수기능과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공사보다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보상비가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 ○ 살매입비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제방·수문 등 하천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국고 50%, 지방비 50% 〈친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 : 국고 100% - 지방하천 : 지방비 100% ※ 국가하천 친수시설 중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하는 친수 시설은 국가관리에 해당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바) 교육부 소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실, 부속건물, 관사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 ○ 건축물 관리대상, 학교시설 관리 대상등을 참조하여 조사 ○ 교실과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구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등 건물은 제외하고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복구비 산정 ※ 교실 등 건물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학교(유치원 포함), 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국고 100% - 사립대학교 : 지방비 50%, 자부담 50%
<p>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 하천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공원내 간이 체육 시설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지방비 50%
<p>아) 문화재청 소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조사하되, 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피해 시설도 포함하여 조사 ○ 피해시설의 위치와 문화재의 명칭 및 관리 등급별(국가·지방)로 조사 ○ 피해액 산정은 기준단가로 산정하되, 기준 단가가 없는 시설은 문화재청 표준설계 금액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멸실되었거나 붕괴 되어 복구가 필요 없을 경우 복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정 문화재 : 국고100% - 지방 관리 문화재 : 국고 50%, 지방비 50%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자) 산림청 소관시설		
	<p>○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 시설, 수목원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국립공원 내 탐방로 등 공원시설 설치·관리 지역 외 일반 산림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의 피해 <p>※ 자연공원 내의 시설·문화재·군사시설 등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복구 주관부처를 결정할 것</p> <p>○ 피해액 산정은 피해물량(ha, km, 개소, 본 등)× 기준단가로 표시하고 세부내역은 기재할 필요 없음</p> <p>○ 피해지 하부 계류의 피해상태를 조사하여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의 시설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 조치</p> <p>○ 산림 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한 하되, 시설 배치도를 참조하여 시설물별 피해 정도를 조사할 것</p> <p>○ 피해 가로수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본수를 확인하고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수 × 기준단가로 표시</p>	<p>○ 복구비는 피해액 등을 토대로 산정</p> <p>※ 산간오지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재산 등의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선복구비를 적용</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li style="text-align: right;">지방비 50% </div> <p>○ 가로수는 피해본수에 기준복구단가에 부담률을 적용 산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부담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리 : 국고 50%, <li style="text-align: right;">지방비 50% </div>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p>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p>차) 부처별 기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공 종별 피해액을 산정 ○ 관공서 건물 등은 소관 부처별로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시설로 구분 조사 ○ 공원묘지, 화장장,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설치 운영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구분 조사 ※ 사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피해조사 ※ 다만, 부속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나,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은 조사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여성가족부 ○ 관광안내표지판, 「전통사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일반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지정 해수욕장 : 문화체육관광부 ○ 공설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 문화재 등록 사찰 : 문화재청 ○ 도시배수펌프장, 지자체 수위 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등 : 행정안전부 ○ 공공 도축장 : 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서건물, 경비초소등 경찰시설 : 경찰청 ○ 탄약, 장비 등 물자를 제외한 군사시설 : 국방부 ○ 기타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시설은 “행정 안전부소관 기타”로 할 것 ○ 피해액 산정은 유사공종을 적용하되, 없는 공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견적 및 설계 단가 적용 ○ 사설묘지(공원묘지 등) 등 이윤 목적 시설은 조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소유의 공공건물 피해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보험금이 국고 세외 수입으로 잡혀 그 피해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구계획에 반영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시설 : 국고 100% - 지방관리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설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 운영) : 국고 50% 지방비 50% </div>

구 분	피 해 조 사 요 령	복 구 계 획 수 립 요 령
다.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가뭄대책	<p>○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복합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의 가뭄대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가뭄대책 사항</p>	<p>○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③항) :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 급수하는 지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p> <p>○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위 규정에 의거 지원 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 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치</p> <p>○ 부담액 :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 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담률</p> <p>- 국고 50%, 지방비 50%</p> </div>
(2) 쓰레기 처리 비용	<p>○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2차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 별로 실제 처리 비용을 조사</p>	<p>○ 관계 중앙부처의 요청에 의거 중앙대책본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담률</p> <p>- 국고 100%</p> <p>○ 소 관</p> <p>- 육상쓰레기 : 환경부</p> <p>-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부</p> </div>
(3) 제설비용	<p>○ 제설비용으로 소모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조사</p> <p>※ 사유시설 제설비용 제외</p>	<p>○ 제설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자재대 및 장비비 비용 확인</p> <p>※ 견적 등 증명자료 확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부담률</p> <p>- 국고 50%, 지방비 50%</p> </div>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54호

2021. 4. 1. 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관 및 역할)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요청하여 수립하는 경우
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장이 피해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립하는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대책본부장

- 가. 피해조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 다. 복구계획 수립 관련 지역대책본부장 업무지원
- 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심의·확정
- 마. 확정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통보
- 바. 대내외 기관 협조, 언론 홍보

2. 지역대책본부장

- 가. 대상지 시설별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 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요청
- 라. 재난관리시스템(NDMS) 전산입력·처리

제4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피해지역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발생일로부터 재해 발생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등 재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지형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등) 또는 기본공간정보·수치지형도(축척 1/5,000)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여부, 피해규모, 피해양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 결과 피해규모 및 유형이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지구를 지형도 또는 기본공간정보·수치지형도에 표시해야 하며, 지구 경계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규모·유형, 동일 수계·구역
2.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
3. 토지의 용도별 이용상태, 토양 및 지질, 재해위험요인
4. 기타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 ⑤ 피해액의 산정은 선정한 지구 내 피해를 시설별·부처별로 분류하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을 합한 값으로 한다.

제6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선정한 지구 내 각각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하고 제4조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복구계획 수립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공공시설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한 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의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 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 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 마.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 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 도시·군관리계획, 지역개발종합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자.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차. 이주대책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상조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구단위복구비용의 산정 등)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지구 내에 포함된 시설의 복구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피해·복구액 조정)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복구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피해·복구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복구계획에 포함한 경우
3. 지구 선정, 복구공법 등이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

4.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대상과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연재난 개선복구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지침

제1절 투자우선순위 평가 목적

-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투자우선순위 평가 기본원칙

- 개선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는 복구대상 시설의 재해 위험성, 시급성, 피해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자우선순위 평가는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려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이 기초자료를 중앙합동조사단장에게 제출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합동조사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반영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 투자우선순위 평가는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는 개선복구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중앙합동조사단장이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일괄적으로 전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산정기준																																
계		100	10개 항목																																
재해위험도 (40점)	① 재난 발생 빈도	15	• 해당지역 재난발생 빈도에 따라 평점 - 3회 이상 15점, 2회 13점, 1회 10점																																
	② 피해 면적	15	• 피해 면적(침수·붕괴 등)에 따라 평점 - 점수 = 15 - $\frac{1}{\text{피해면적(ha)}}$ * 예) 1.0ha → 14점 0.5ha → 13점 0.1ha → 5점																																
	③ 인명피해 연관성	10	• 사망·실종자 발생지역 10점, 부상자 발생지역 7점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 지시 및 실제 대피 7점 * 그 외 0점																																
시급성 (30점)	④ 피해지역의 입지조건	10	•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피해지역 입지 등에 따라 평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가 등급</th> <th>나 등급</th> <th>다 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자연재해대책법</td> <td>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급경사지법</td> <td rowspan="2">D-E등급</td> <td rowspan="2">C등급</td> <td rowspan="2">A-B등급</td> </tr> <tr> <td colspan="2">저수지법 등</td> </tr> <tr> <td>국토</td> <td>용도지역</td> <td>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td> <td>상업·공업지역</td> <td>그 외 지역</td> </tr> <tr> <td>계획법</td> <td>용도지구</td> <td>방재지구, 취약지구</td> <td>시설보호지구</td> <td>-</td> </tr> <tr> <td colspan="2">점수</td> <td>10</td> <td>5</td> <td>3</td> </tr> </tbody> </table>	구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	급경사지법		D-E등급	C등급	A-B등급	저수지법 등		국토	용도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공업지역	그 외 지역	계획법	용도지구	방재지구, 취약지구	시설보호지구	-	점수		10	5	3
	구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																														
급경사지법		D-E등급	C등급	A-B등급																															
저수지법 등																																			
국토	용도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공업지역	그 외 지역																															
계획법	용도지구	방재지구, 취약지구	시설보호지구	-																															
점수		10	5	3																															
⑤ 위험구역 범위	10	• 위험구역(침수, 붕괴 등) 범위에 따라 평점 - 점수 = 10 - $\frac{1}{\text{위험구역(ha)}}$ * 예) 1.0ha → 9점 0.5ha → 8점 0.1ha → 0점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범람도 등을 토대로 산정																																	
⑥ 위험구역 내 거주 인구율	10	• ⑤번 항목 위험구역 내 거주인구 비율에 따라 평점 - 점수 = 10 - $\frac{\text{위험구역(a)}}{\text{거주인구(명)}}$ * 예) 1ha 100명 → 9점 3ha 100명 → 7점 1ha 10명 → 0점 3ha 10명 → 0점																																	
사업 여건 (30점)	⑦ 기본계획수립여부	10	• 관련 기본계획 수립 또는 재수립 여부																																
	⑧ 타당성	5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재난예방계획 반영 여부																																
	⑨ 특수성	5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⑩ 관심도	10	• 지자체·지역주민 사업추진 의지 1~10점(정성평가)																																
※ 1)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하고, 결과값이 음수일 경우 0점 으로 처리 2)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 항목부터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시설을 우선순위로 조정 3) 준비성이 0점인 경우 1단계 後 순위로 조정(중앙합동조사단 및 중앙대책본부 평가 시 각각 적용) 4) 재난예방계획 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등 자연재난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5) 관심도 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중앙대책본부에서 평가점수 부여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재해위험도 : 총 40점 ▶

(1) 재난 발생빈도(15점)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10년간의 피해 현황 자료를 토대로 동일 지역(시·군·구 기준)에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횟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3회 이상 15점, 2회 13점, 1회 10점

구 분	자연재난 발생 빈도			비 고
	3회 이상	2회	1회	
평가점수	15	13	10	

(2) 피해 면적(15점)

- 침수, 유실, 붕괴 등 실제 피해가 발생 된 면적을 산정(ha)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15 - \frac{1}{\text{피해면적}(ha)}$ (최대 15점 적용)
- 피해 면적은 개선복구사업 단일 개소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하천 유역면적을 반영하여 피해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 면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선복구계획서의 피해 면적 산출 자료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피해 면적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 피해면적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피해면적 1ha) 평가점수 = $15 - 1/1ha = 14점$
 - (피해면적 0.5ha) 평가점수 = $15 - 1/0.5ha = 13점$
 - (피해면적 0.1ha) 평가점수 = $15 - 1/0.1ha = 5점$

(3) 인명피해 연관성(10점)

-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에서 인명피해 발생 여부 또는 가능성이 있어 대피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실종자, 부상자, 주민 대피 지시 및 대피 여부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인명피해 연관성은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구로 한정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타 지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이력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점수 : 사망·실종자 10점, 부상자 7점, 주민 대피 지시 및 대피 5점, 그 외 0점
 - * 평가점수는 누적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

구 분	인명피해 연관성				비 고
	사망·실종자	부상자	대피 지시 또는 대피	그 외	
평가점수	10	7	5	0	

《 시급성 : 총 30점 》

(4) 피해지역의 입지여건(10점)

- 피해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등급표에 따른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비고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	
급경사법, 저수지법 등	D등급	C등급	AB등급	
국토 계획법	용도지역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상업·공업지역	그 외 지역
	용도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시설보호지구	-
평가점수	10	5	3	

해설

- 피해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업·공업지역) 평가점수 = $\max(10, 5) = 10$ 점
 - (급경사지 C등급, 계획관리지역) 평가점수 = $\max(5, 10) = 10$ 점

(5) 위험구역 범위(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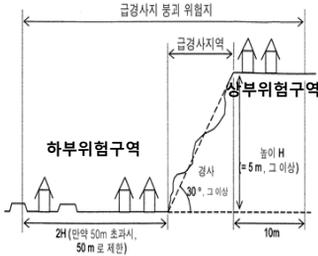
- 위험구역 범위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근거한 위험지역, 홍수범람도 등을 토대로 면적을 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점수 = $10 - \frac{1}{\text{위험구역}(ha)}$ (최대 10점 적용)

- * ① (하천·소하천) 하천·소하천 구역을 포함한 복구사업 계획 구간 전체 면적 (하천·소하천 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을 포함)
- ② (배수펌프장) 침수 해소 구역의 면적(위성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 ③ (사면) ‘급경사지 피해구역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 ※ 침수·범람·붕괴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되는 주거지·농경지 등의 면적

해설

- 피해위험구역 범위 기준(「붕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안 연구」 준용, 2011.12.)
 <피해위험구역 범위기준>



▶ 위험구역 면적산정 방법

① 단위면적 = 하부위험구역(2H) + 급경사지역(0.5H) + 상부위험구역(H)

② 면적산정(㎡) = 단위면적(①) × 급경사지 연장(L)

※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

※ 단위 변환(㎡ → ha) : 1㎡ = 0.0001ha

해설

- 위험구역 범위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위험구역 1ha) 평가점수 = 10 - 1/1ha = 9점
 - (위험구역 0.5ha) 평가점수 = 10 - 1/0.5ha = 8점
 - (위험구역 0.1ha) 평가점수 = 10 - 1/0.1ha = 0점

(6) 위험구역 내 거주 인구율(10점)

- (5)번 항목의 위험구역 범위(a) 내 거주인구(명)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10 - $\frac{\text{위험구역}(a)}{\text{거주인구(명)}}$ (최대 10점, 최소 0점 적용)

- 다만, 인구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위험구역 내 주택 개소수에 2.3*을 곱하여 산정한다.

* '20년 기준 세대별 평균 가구원수(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1.8.12.)」 결과)

해설

- 위험구역내 거주 인구율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위험구역 1ha, 100명) 평가점수 = 10 - 100a/100명 = 9점
 - (위험구역 3ha, 100명) 평가점수 = 10 - 300a/100명 = 7점
 - (위험구역 1ha, 10명) 평가점수 = 10 - 100a/ 10명 = 0점
 - (위험구역 3ha, 10명) 평가점수 = 10 - 300a/ 10명 = 0점

《 사업 여건 : 총 30점 》

(7) 기본계획 수립 여부(10점)

- 개선복구 대상 시설의 상위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기한*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하천·소하천) 하천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이후 10년
(기타 방재시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10년

- 평가점수 : 기본계획 수립 10점, 비대상 5점, 미수립 또는 재수립 대상 0점

(8) 타당성(5점)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재난법령에 따른 재난예방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재난예방계획* 반영 5점, 미반영 0점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소하천 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등

(9) 특수성(5점)

- 개선복구사업 대상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선포가 예상되는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선포 예상 지역에 포함 5점, 미포함 0점

※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한 경우 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10) 관심도(10점)

-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피해지역 주민의 개선복구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앙합동조사단장의 의견을 들어 중앙대책본부장이 종합적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점수 : 정성적 평가 1~10점 부여

해설

- 1)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하고, 결과값이 음수일 경우 0점으로 처리
- 2)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항목부터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시설을 先 순위로 조정
- 3) 준비성이 0점인 경우 1단계 後 순위로 조정(중앙합동조사단 및 중앙대책본부 평가 시 각각 적용)
- 4) 재난예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소규모시설 정비계획 등 자연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 5) 관심도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중앙대책본부에서 평가점수 부여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33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사유공공시설) 134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 기준지수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1) 구호금	사망·실종자	인	20,000,000	20,000	
	부상자(1~7등급)	인	10,000,000	10,000	
	부상자(8~14등급)	인	5,000,000	5,0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구호비	응급구호비	1인1일	8,000		
	장기구호비	1인1일	8,000		8
(2) 생계지원	1인 가구	세대	488,800	488.80	
	2인 가구	세대	826,000	826.00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
	3인 가구	세대	1,066,000	1,066.00	가 지급
	4인 가구	세대	1,304,900	1,304.90	
	5인 가구	세대	1,541,600	1,541.60	
	6인 가구	세대	1,773,700	1,773.70	
다. 학자금(수업료)	지역별 적용(6개월)				

구 분	금지 구분	6개월 수업료																
		서울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세종	전남	전북	경기
보통교 (단·중·고)	특급지(세출)	725,400																
	1급지 가(연생당당)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연생당당)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연생당)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연생당)	439,200	406,800	403,2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보통교 (단·초·중·고)	3급지(단·초·중·고)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급지(세출)	725,400																
	1급지 가(연생당당)	691,800	475,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연생당당)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연생당)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충남(단·중·고)	2급지 나(연생당)	439,200	406,800	403,200	552,0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단·초·중·고)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급지(세출)	725,400																
	1급지 가(연생당당)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07,200	280,200	285,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연생당당)			283,200	297,000			270,600				255,000			313,800	300,000		
충남(단·초·중·고)	2급지 가(연생당)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45,400	276,600	271,200	277,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연생당)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0,400	259,200	256,200	257,4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단·초·중·고)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02,8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특급지(세출)	725,400																
	1급지 가(연생당당)	691,800	285,6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56,400	284,600		313,800	615,600	685,800	
충남(단·고)	1급지 나(연생당당)			283,200				270,600			277,200				313,800	300,000		
	2급지 가(연생당)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연생당)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단·초·중·고)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1급지 나(연생당당)			283,200				270,600			277,200				313,800	300,000		
2급지 가(연생당)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연생당)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단·초·중·고)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연평균		67,500	55,200	시비7,600 기비42,000	42,600	67,800	58,800	70,400	48,600	69,900	65,400	41,400	42,000	30,000	40,500	41,400	40,2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사유시설공공시설)

1. 사유시설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지수	비고
〈소관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세입자)〉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전파/유실	동	52,000,000	15,600.00	
	반파	동	26,000,000	7,800.00	
(2)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2,000,000	2,000.00	
(3) 주택소파	소파주택수리비	세대	900,000	900.00	
(4)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6,000,000	6,000	
	임대료	세대	6,000,000	6,000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물	농경지 유실	㎡	5,136	3.08	
	농경지 매물	㎡	2,271	1.36	
다. 농림·산림·염전시설 및 농작물·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멧트온실	㎡	104,637	36.62	
	철골유리온실	㎡	202,014	70.70	
	철골유리온실(유리만)	㎡	10,950	3.83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7,820	13.24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8,963	3.14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10,524	3.68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4,054	1.42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4,483	1.57	
	내재해형-07-연동-1, 08-연동-1 (내재해형-자동화(07, 08형))	㎡	45,300	15.86	
	내재해형-10-연동-1, 10-연동-2 (내재해형-자동화(10형))	㎡	64,218	22.48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내재해형-07-단동-1	m ²	6,229	2.18	
	내재해형-07-단동-2	m ²	10,283	3.60	
	내재해형-07-단동-3	m ²	9,510	3.33	
	내재해형-07-단동-4	m ²	9,739	3.41	
	내재해형-07-단동-18	m ²	14,548	5.09	
	내재해형-10-단동-1	m ²	12,516	4.38	
	내재해형-10-단동-2	m ²	11,765	4.12	
	내재해형-10-단동-3	m ²	12,042	4.21	
	내재해형-10-단동-4	m ²	12,748	4.46	
	내재해형-10-단동-5	m ²	12,461	4.36	
	내재해형-10-단동-6, 7, 8, 9	m ²	25,149	8.80	
	내재해형-10-단동-10, 11, 12, 13	m ²	10,809	3.78	
	내재해형-12-단동-1	m ²	14,990	5.25	
	내재해형-10-광폭-1(아치형)	m ²	29,000	10.15	
	내재해형-10-광폭-2(트러스형)	m ²	47,950	16.78	
	내재해형-07-단동(민간)-1, 2	m ²	21,941	7.68	
	내재해형-07-단동(민간)-3, 4	m ²	25,000	8.75	
	내재해형-08-단동(민간)-1	m ²	22,550	7.89	
	내재해형-10-광폭(민간)-1, 2, 3 (단동-민간광폭형)	m ²	47,850	16.75	
	내재해형-07-연동(민간)-1	m ²	28,807	10.08	
	내재해형-12-연동-1	m ²	80,562	28.20	
	내재해형-07-포도-1(과수하우스)	m ²	26,328	9.21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1	m ²	30,997	10.85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2	m ²	32,294	11.30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3	m ²	31,980	11.19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4	m ²	31,563	11.05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5	m ²	30,097	10.53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6	m ²	29,878	10.46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광폭(10-포도-1)	㎡	12,452	4.36	
	내재해형-광폭(08-감귤-1)	㎡	29,192	10.22	
	내재해형-버섯(08-버섯-2)	㎡	136,071	47.62	
	내재해형-민간(08-연동-1)	㎡	23,700	8.30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	4,700	1.65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cm	㎡	2,910	1.02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cm	㎡	2,750	0.96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141.05	
	판넬재배사	㎡	151,000	52.85	
	간이재배사	㎡	75,000	26.25	
- 과수재배시설	턱시설	㎡	2,057	0.72	
	지주시설	㎡	2,470	0.86	
	방조망	㎡	2,228	0.78	
	관수시설	㎡	1,694	0.59	
	방풍망시설	㎡	2,421	0.85	
	간이비가림시설	㎡	2,657	0.93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400,000	140.00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911,639	319.07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479,000	517.65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368,767	129.07	
	퇴비제조시설	㎡	628,895	220.11	
	농막-컨테이너형(3×6m)	동	2,472,000	865.20	
	농막-판넬형(3×6m)	동	5,736,000	2,007.60	
	내부시설	㎡	11,630	4.07	
- 양액재배시설					
(소관 : 산림청)					
-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35,970	12.59	
	표고재배사(톱밥매지 표고양묘)	㎡	60,459	21.16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	9,123	3.19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10,240	3.58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13,635	4.77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소관 : 해양수산부> - 염전시설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13,735	4.81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14,235	4.98	
	염전 소금창고	㎡	208,500	72.98	
	염전 해주	㎡	69,500	24.33	
	결정지(유실)	㎡	377	0.23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10	재난자수의 10%	과수목 포함
	(필요할 경우)	지수	10	재난자수의 10%	
<소관 : 산림청> - 임업시설 철거비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	㎡	380	0.19	
	채소(엽근채류)	㎡	586	0.29	
	채소(과채류)	㎡	884	0.44	
	채소(토마토, 풋고추, 가지)	㎡	1,840	0.92	
	채소(오이, 딸기)	㎡	2,264	1.13	
	채소(파프리카)	㎡	4,088	2.04	
	채소(노지고추)	㎡	334	0.17	
	채소(마늘, 생강)	㎡	1,038	0.52	
	채소(양파, 대파, 쪽파)	㎡	571	0.29	
	인삼(묘삼기준, 1~2년근)	㎡	1,505	0.75	
	인삼(묘삼기준, 3~4년근)	㎡	2,169	1.08	
	인삼(묘삼기준, 5~6년근)	㎡	2,833	1.42	
	과수(묘목기준)-사과	㎡	1,763	0.88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과수(묘목기준)-배	m ²	517	0.26	
	과수(묘목기준)-복숭아	m ²	306	0.15	
	과수(묘목기준)-포도	m ²	496	0.25	
	과수(묘목기준)-단감	m ²	235	0.12	
	과수(묘목기준)-감굴	m ²	438	0.22	
	과수(묘목기준)-참다래	m ²	646	0.32	
	과수(묘목기준)-유자	m ²	637	0.32	
	과수(묘목기준)-블루베리	m ²	2,535	1.27	
	과수(묘목기준)-아로니아	m ²	1,190	0.60	
	과수(묘목기준)-체리	m ²	831	0.42	
	과수(묘목기준)-무화과	m ²	730	0.37	
	화훼-백합(생육초기)	m ²	4,087	2.04	
	화훼-장미(생육초기)	m ²	2,980	1.49	
	화훼-선인장(생육초기)	m ²	1,454	0.73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m ²	7,020	3.51	
	화훼-안개초(생육초기)	m ²	3,689	1.84	
	화훼-국화(생육초기)	m ²	1,296	0.65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m ²	4,232	2.12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m ²	2,151	1.08	
	화훼-호접란(생육초기)	m ²	24,545	12.27	
	버섯류(종균기준) - 식용류	m ²	4,531	2.27	
	버섯류(종균기준) - 약용류	m ²	12,576	6.29	
	녹차(묘목기준)	m ²	1,618	0.81	
	뽕나무(누에 사육용)	m ²	4,545	2.27	
	뽕나무(오디 생산용)	m ²	1,901	0.95	
<소관 : 산림청>					
- 산림작물	표고자목(1.2m)-노지	본	4,271	2.14	
	표고자목(1.2m)-시설	본	4,271	2.14	
	잔디(파종생산비)	m ²	1,668	0.83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 ²	7,818	3.91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 ²	8,488	4.24	
	유실수(묘목기준)-밤	m ²	178	0.09	
	유실수(묘목기준)-대추	m ²	396	0.20	
	유실수(묘목기준)-떨은감	m ²	267	0.13	
	유실수(묘목기준)-호두	m ²	467	0.23	
	유실수(묘목기준)-은행	m ²	367	0.18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²	2,556	1.28	
	약용류(묘목기준)	m ²	2,150	1.08	
	복분자(묘목기준)	m ²	2,634	1.32	
	산딸기(묘목기준)	m ²	1,441	0.72	
	머루(묘목기준)	m ²	2,669	1.33	
	다래(묘목기준)	m ²	1,560	0.78	
	구기자(묘목기준)	m ²	257	0.13	
	당귀(묘목기준)	m ²	265	0.13	
	산약(묘목기준)	m ²	418	0.21	
	고사리(종자대)	m ²	305	0.15	
	도라지(종자대)	m ²	1,214	0.61	
	더덕(종자대)	m ²	1,751	0.88	
	두릅(종자대)	m ²	4,442	2.22	
	취나물(종자대)	m ²	1,976	0.99	
	산양삼(종자대)	m ²	3,450	1.73	
	약초류(종자대)	m ²	1,198	0.60	
	삼지구엽초(종자대)	m ²	2,954	1.48	
	산마늘(종구)	m ²	7,076	3.54	
	오미자(묘목대)	m ²	1,663	0.83	
	산수유(묘목대)	m ²	452	0.23	
	헛개나무(묘목대)	m ²	759	0.38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표고툽밥배지 상면재배(중균대)	m ²	18,041	9.02	
	표고툽밥배지 균상재배(중균대)	m ²	6,042	3.02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② 농약대					
- 농림작물	일반작물	m ²	74	0.07	
	채소류	m ²	240	0.24	
	과수류	m ²	249	0.25	
	인삼	m ²	370	0.37	
	약용류	m ²	157	0.16	
	화훼류	m ²	1,268	1.27	
<소관 : 산림청>					
- 산림작물	산채류	m ²	240	0.24	
	수실류	m ²	249	0.25	
	산양삼, 약초류	m ²	462	0.46	
	약용류	m ²	157	0.16	
	야생화	m ²	1,268	1.27	
	조경수	m ²	164	0.16	
	표고버섯	m ²	54	0.05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옥우사	m ²	130,000	45.50	
	우사-유우사	m ²	158,000	55.30	
	돈사-번식돈사	m ²	412,662	144.43	
	돈사-비육돈사	m ²	271,292	94.95	
	계사-산란계사	m ²	223,095	78.08	
	계사-육계사	m ²	183,104	64.09	
	계사-육용종계사	m ²	225,000	78.75	
	토사-육토사	m ²	108,000	37.80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자수	비고
(2) 축산분뇨시설	종오리사	m ²	135,000	47.25	
	육용오리사	m ²	180,000	63.00	
	부화장	m ²	750,000	262.50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13.65	
	분뇨처리시설-한육우	m ²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젓소	m ²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돼지	m ²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닭(평사)	m ²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m ²	102,228	35.78	
	분뇨처리시설-오리	m ²	102,228	35.78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m ²	951		
	초지복구(불경운초지)	m ²	816		
	초지복구(임간초지)	m ²	497		
(4) 잠살파손	치잡공동사육사(케리아잠살)	m ²	609,000	213.15	
	애누에공동잠살(브릭및패널형)	m ²	441,300	154.46	
	일반잠살(브릭형)	m ²	271,067	94.87	
(5) 곤충사육사	조상육잠살(조립식판넬형)	m ²	245,000	85.75	
	곤충사육사(판넬형, 200)	m ²	517,227	181.03	
(6) 가축입식	곤충사육사(판넬형, 336)	m ²	425,549	148.94	
	한우-송아지(4~5개월령)	마리	1,529,500	764.75	
	한우-육성우	마리	1,921,500	960.75	
	젓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170.86	
	젓소-육성우	마리	1,102,000	551.00	
	육우-분유떼기(2개월령)	마리	277,500	138.75	
	육우-육성우(12개월령)	마리	777,500	388.75	
	돼지-자돈(30kg)	마리	79,534	39.77	
	돼지-육성돈(110kg)	마리	211,500	105.75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0.21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0.31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산란계-중추	마리	1,877	0.94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2,061	1.03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6,000	3.00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3,884	1.94	
	종계-중추(육용)	마리	3,006	1.50	
	토종닭-병아리	마리	289	0.14	
	토종닭-중추	마리	1,588	0.79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105,680	52.84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4,275	2.14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0.33	
	오리-중추	마리	3,206	1.60	
	종오리-새끼	마리	5,000	2.50	
	원종오리-새끼	마리	49,371	24.69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70.38	
	꿀벌-토종(1군)	군	250,000	125.00	
	인공사육(핑)-병아리(2-4개월령)	마리	3,300	1.65	
	사슴-자육(엘크)	마리	990,000	495.00	
	사슴-자육(꽃사슴, 기타)	마리	240,000	120.00	
	사슴-자육(레드디어)	마리	330,000	165.00	
	말(조랑말, 망아지포함)	마리	5,297,700	2,648.85	
	말(경주마 망아지)	마리	9,337,500	4,668.75	
	말(경주마)	마리	20,900,000	10,450.00	
	개(강아지)	마리	50,000	25.00	
	칠면조-병아리	마리	5,500	2.75	
	거위-병아리	마리	7,500	3.75	
	메추리-새끼	마리	137	0.07	
	지렁이	kg	33,330	16.67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15.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37.49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7) 누에 유실·폐사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20.00	
	공작-병아리	마리	120,000	60.00	
	유실/폐사-봄누에	kg	11,842	5.92	
	유실/폐사-가을누에	kg	12,242	6.12	
(8) 곤충	천적(마일즈응애, 아쿠레이퍼응애)	kg	34,000	17.00	
	천적(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kg	159,750	79.88	
	천적(진디혹파리,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kg	671,667	335.83	
	천적(콜레마니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황온좀벌, 온살가루이좀벌, 굴파리좀벌, 앞굴파리고치벌)	kg	824,417	412.21	
	천적(금좀벌)	kg	35,500	17.75	
	환경·사료용(등애등애류)	kg	3,368	1.68	
	학습용(시슴벌레류)	kg	155,488	77.74	
	학습용(장수풍뎅이류)	kg	37,566	18.78	
	식용(흰접박이꽃무지)	kg	74,507	37.25	
	식용(쌍별귀뚜라미)	kg	43,981	21.99	
	식용(메뚜기)	kg	24,000	12.00	
	식용(장수풍뎅이)	kg	27,666	13.83	
	식용(갈색거저리)	kg	25,604	12.80	
	<소관 : 해양수산부>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11,500,000	4,025.00	
	동력선-FRP	톤	12,600,000	4,410.00	
	동력선-목선	톤	7,000,000	2,450.00	
	무동력선-FRP	톤	5,023,000	1,758.05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1,219.40	
	(2) 어망어구·정차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18,331.60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18,779.25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16,817.85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정치성어구류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16,114.35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18,608.10	
	낙망(대)-동해	통	500,000,000	175,000.00	
	낙망(중)-동해	통	300,000,000	105,000.00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10,178.00	
	낙망(소)-서해	통	11,632,000	4,071.2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15,193.15	
	각망(중)-동해	통	155,000,000	54,250.00	
	각망(중)-남해	통	1,462,400	511.84	
	각망(중)-서해	통	600,000	210.00	
	소대망(대)-남해	통	202,701,550	70,945.54	
	소대망(중)-남해	통	165,005,980	57,752.09	
	소대망(소)-남해	통	115,536,050	40,437.62	
	죽방렘(대)-남해	통	34,284,000	11,999.40	
	죽방렘(소)-남해	통	27,366,000	9,578.10	
	낭장망-서해	통	2,750,000	962.50	
	낭장망-남해	통	2,900,000	1,015.00	
	각망-남해	통	1,065,400	372.89	
	삼각망-서해	통	1,450,000	507.50	
	호망-동해	통	120,000,000	42,000.00	
	호망-남해	통	4,140,000	1,449.00	
	건망-동해	통	150,000,000	52,500.00	
	건망-남해	통	9,790,000	3,426.50	
	승망-남해	통	1,727,000	604.45	
	근해안강망	통	5,300,000	1,855.00	
	연안개량안강망	통	4,060,000	1,421.00	
	각망-내수면	통	190,000	66.50	
	돌추 낭장망 200코(대형)	통	148,000	51.80	
닷자망-서해	틀	7,139,324	2,498.76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유자망류	푼치-동해(1척기준:400푼)	푼	155,000	54.25	
	오징어-동해(1척기준:50푼)	푼	101,000	35.35	
	멸치-남해(1척기준:25푼)	푼	368,120	128.84	
	삼치-남서해(1척기준:230푼)	푼	72,410	25.34	
	참조기-서해(1척기준:350푼)	푼	44,850	15.70	
	학꽂치-동남해(1척기준:15푼)	푼	95,000	33.25	
	방어-동해(1척기준:20푼)	푼	133,460	46.71	
	명태-동해(1척기준:150푼)	푼	120,000	42.00	
	양미리-동해(1척기준:20푼)	푼	280,000	98.00	
	꽃게(1척기준:240푼)	푼	30,000	10.50	
	청어-동해(1척기준:30푼)	푼	130,000	45.50	
	도루묵-동해(1척기준:50푼)	푼	120,000	42.00	
	아귀-동남해(1척기준:25푼)	푼	150,000	52.50	
	넙치-동해(1척기준:30푼)	푼	135,000	47.25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120,000	42.00	
	대게-동해(1척기준:160푼)	푼	123,000	43.05	
	곰치-동해(1척기준:20푼)	푼	170,000	59.50	
	대구-동해(1척기준:20푼)	푼	135,000	47.25	
	임연수-동해(1척기준:20푼)	푼	140,000	49.00	
	- 고정자망류	꽃게-서해(1척기준:1000푼)	푼	18,973	6.64
자망-내수면(1척기준:3푼)		푼	50,000	17.50	
- 인망류	멸치권현망-남해(1척기준)	통	26,461,500	9,261.53	
-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1,500	4.03	
	붕장어(그물)-전해역(1척기준:1,000개)	개	4,760	1.67	
	붕장어(플라스틱) * 5,000개	개	1,229	0.43	
	골뱅이-동해(1척기준:2,000개)	개	5,000	1.75	
	꽃게-서해(1척기준:1500개)	개	8,234	2.88	
	꽃게(1척기준:2500개)	개	2,800	0.98	
	물메기-남해(1척기준:1500개)	개	4,483	1.57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낚시류: 주낚	쭈꾸미-서해(1척기준:10,000개)	개	358	0.13	
	통발-내수면(1척기준:100개)	개	5,500	1.93	
	낙지(1척기준:2500개)	개	1,822	0.64	
	도다리(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5.60	
	쥐치(그물)-동남해(1척기준:80개)	개	16,000	5.60	
	문어단지	개	700	0.25	
	문어통발-남해	개	3,200	1.12	
	통발-남해	개	3,900	1.37	
	소라(1척기준:1,000개)	개	172	0.06	
	명태-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245	1.14	
	넙치-남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23,840	8.34	
	농어-서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37,510	13.13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9.04	
	옥돔-남해(1척기준:70바스켓)	바스켓	17,580	6.15	
	문어-동해(1척기준:30바스켓)	바스켓	10,000	3.50	
	가자미-동해(1척기준:50바스켓)	바스켓	30,000	10.50	
	주남-내수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32,000	11.20	
	주남-농어(1척기준:10바스켓)	바스켓	15,080	5.28	
	삼치-동남해(1척기준:6개)	개	35,000	12.25	
	장어-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14.00	
도다리-동남해(1척기준:20바스켓)	바스켓	40,000	14.00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페류					
	굴(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4,016.95	
	굴(연승수하식)-100m당	줄	533,375	186.68	
	굴(수평망식)-3.6m ² 당	대	220,000	77.00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1,003,030	351.06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해조류	굴채묘(간이수하식)-25×2m당	대	794,570	278.10	
	피조개(천해살포식)	ha	582,820	203.99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140.69	
	바지락(간석지살포식)	ha	553,000	193.55	
	홍합(연승수하식)-100m당	줄	587,958	205.79	
	새고막(천해살포식)	ha	746,000	261.10	
	새고막채묘(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55.65	
	고막(간석지살포식)	ha	423,500	148.23	
	가무락(간석지살포식)	ha	1,130,000	395.50	
	등죽(간석지살포식)	ha	230,000	80.50	
	백합(간석지살포식)	ha	2,163,200	757.12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855.40	
	전복(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536.38	
	전복(육상수조식3.3㎡)	㎡	115,252	40.34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 2.4×2.4m)	칸	252,058	88.22	
	전복종묘생산(육상수조식3.3㎡)	㎡	117,975	41.29	
	가리비(연승채롱식)-100m당	줄	4,332,000	1,516.20	
	가리비(연승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908.25	
	가리비(천해살포식)	ha	250,000	87.50	
	가리비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2,244,550	785.59	
	진주조개(연승수하식)-100m당	줄	762,575	266.90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500.08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줄	64,200	22.47	
	김(지주망홍식)-2.2×40m당	책	325,000	113.75	
	김(부류망홍식)-2.2×40m당	책	454,800	159.18	
	김(부류망홍식)채묘시설-2.2×40m당	책	227,400	79.59	
	김(부류망홍식)중간양성시설-2.2×40m당	책	60,000	21.00	
	김(지주축홍식)-1.8×40m당	책	177,000	61.95	
	미역(연승수하식)-100m당	줄	230,572	80.7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어류	다시매(연승수하식)-100m당	줄	165,000	57.75	
	뿔(연승수하식)-100m당	줄	118,000	41.30	
	참모자반(연승수하식)-100m당	줄	96,525	33.78	
	청각(연승수하식)-100m당	줄	89,306	31.26	
	매생이(2.2m×40m)	책	92,800	32.48	
	파래(2.2m×40m)	책	33,264	11.64	
	어류양식(육상수조식)	m ²	125,537	43.94	
	어류양식(해상가두리)-5×5m당	칸	1,461,000	511.35	
	어류양식(해상가두리)-내파성5×5m당	칸	2,587,000	905.45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40m	조	48,823,856	17,088.35	
	어류양식(외해표층가두리)-내파성Ø25m	조	25,882,825	9,058.99	
- 기타류	종묘생산(육상수조식)	m ²	74,787	26.18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11.08	
	우렁챙이(연승수하식)-100m당	줄	783,812	274.33	
	성계(연승수하식)-100m당	줄	1,373,000	480.55	
	새우(축제식)	ha	13,000,000	4,550.00	
	미더덕류(판그물 100m)	줄	353,525	123.73	
- 내수면양어장	미더덕류(봉그물 100m)	줄	651,630	228.07	
	양어장(철근콘크리트)	m ²	102,070	35.72	
	가두리양어장(5×5m×4칸)	조	2,748,570	962.00	
	관리사	m ²	139,150	48.70	
	양어장판넬지붕형-철골구조	m ²	121,550	42.54	
- 기타시설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654	11.08	
	일반비닐하우스-철재파이프형	m ²	3,176	1.11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m ²	833,333	291.67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m ²	2,480,159	868.06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간이	m ²	202,020	70.71	
	소각식분료처리시설	m ²	4,000,000	1,400.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40m×16m)	통	26,400,000	9,240.00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철거비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PE무결, Ø25m×10m)	통	11,920,000	4,172.00	
	외해어류가두리 양식용 어망 (낮철 Ø25m×10m)	통	6,880,000	2,408.00	
	수산증양식시설철거	지수	10	재난자수의 10%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패류	굴(단련종패142연)-수하식 100m	줄	900,000	450.00	
	전복(2cm미만)-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350	0.18	
	전복(2cm이상)-투석식:2만미/ha, 수하식:1천미/100m,육상수조식	마리	770	0.39	
	피조개(각장2cm내외,1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바지락(각장1~2cm,3톤)-살포식	ha	3,750,000	1,875.00	
	홍합(각장2~3cm,142연)-수하식	100m	137,500	68.75	
	새고막(각장2cm내외,2톤)-살포식	ha	4,950,000	2,475.00	
	고막(각장2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가무라크(각장2.5cm내외,3톤)-살포식	ha	6,000,000	3,000.00	
	동죽(각장1~2cm,3톤)-살포식	ha	900,000	450.00	
	백합(각장1~3cm,3톤)-살포식	ha	15,000,000	7,500.00	
	가리비(각장5~7cm,13천미)-수하식	100m	1,050,000	525.00	
	가리비(각장5~7cm,15천미)-채롱식	100m	1,050,000	525.00	
	가리비(각장5~7cm,38천미)-귀매달이식	100m	2,660,000	1,330.00	
	가리비(각장3~5cm,100천미)-살포식	ha	3,500,000	1,750.00	
	진주조개(각고5cm내외,8,820미)-수하식	100m	2,500,000	1,250.00	
	진주조개(직경7mm,핵2관)	핵	1,400,000	700.00	
	키조개종패(이식, 각장 15~20cm)	ha	20,000,000	10,000.00	
	굴(각장 1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6	0.01	
	굴(각장 7~10cm내외, 수평망식)	마리	140	0.07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해조류	김(50개/상자,2상자)-건홍식	책	10,000	5.00	
	미역(종묘수량150m)-수하식만기산	100m	27,000	13.50	
	미역(종묘수량150m)-조기산	100m	30,000	15.00	
	다시미(종묘수량150m)-수하식	100m	20,000	10.00	
	툫(5~20cm,15kg)-수하식	100m	100,000	50.00	
	참모자반(종묘수량160m)-수하식	100m	100,000	50.00	
- 기타류	우렁챙이(종묘량14,200m)-수하식,줄	100m	2,614,220	1,307.11	
	우렁챙이종묘-연승수하식,줄	100m	9,205,000	4,602.50	
	성계(체장2~3cm,1,500미)-수하식	100m	900,000	450.00	
	새우(체장2cm내외,200천미)-축제식	ha	1,225,000	612.50	
	새우(체장2cm내외)-육상수조식	마리	10	0.01	
	다슬기-각고0.7~1.4cm내외	kg	74,250	37.13	
	해삼(5cm미만)	마리	176	0.09	
	갯지렁이(지층-1년생미만)	마리	32	0.02	
	갯지렁이(성층-1년생이상)	마리	80	0.04	
	미더덕(체장1cm내외) 수하식 100m	100m	106,900	53.45	
- 해면양식어류	방어(작은고기5~7cm)	마리	600	0.30	
	방어(큰고기)	마리	3,037	1.52	
	넙치(작은고기5~7cm)	마리	574	0.29	
	넙치(큰고기)	마리	3,000	1.50	
	조피볼락(작은고기5~7cm)	마리	666	0.33	
	조피볼락(큰고기)	마리	1,880	0.94	
	참돔(작은고기5~7cm)	마리	1,119	0.56	
	참돔(큰고기)	마리	4,300	2.15	
	농어(작은고기5~7cm)	마리	932	0.47	
	농어(큰고기)	마리	4,550	2.28	
	노래미(작은고기5~7cm)	마리	341	0.17	
	노래미(큰고기)	마리	5,750	2.88	
	볼락(작은고기5~7cm)	마리	662	0.33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 내수면양식어류	볼락(큰고기)	마리	1,608	0.80	
	능성어(작은고기5~7cm)	마리	5,114	2.56	
	능성어(큰고기)	마리	21,739	10.87	
	쥐치(작은고기7~8cm)	마리	558	0.28	
	쥐치(큰고기)	마리	3,280	1.64	
	송어(작은고기5~8cm)	마리	745	0.37	
	송어(큰고기)	마리	2,525	1.26	
	고등어(작은고기5~8cm)	마리	200	0.10	
	고등어(큰고기)	마리	1,750	0.88	
	전어(작은고기5~7cm)	마리	32	0.02	
	전어(큰고기)	마리	750	0.38	
	강도다리(작은고기5~7cm)	마리	630	0.32	
	강도다리(큰고기)	마리	6,281	3.14	
	솜뱅이(작은고기 5~7cm)	마리	180	0.09	
	솜뱅이(큰고기)	마리	8,175	4.09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마리	213	0.11	
	황점볼락(큰고기)	마리	4,150	2.08	
	복어(작은고기)	마리	240	0.12	
	복어(큰고기)	마리	4,877	2.44	
	민어(작은고기)	마리	200	0.10	
	민어(큰고기)	마리	3,000	1.50	
	감성돔(작은고기5~8cm)	마리	856	0.43	
	감성돔(큰고기)	마리	3,596	1.80	
	돌돔(작은고기5~7cm)	마리	1,272	0.64	
	돌돔(큰고기)	마리	2,754	1.38	
	참다랑어(작은고기 30cm이하)	마리	40,000	20.00	
	참다랑어(큰고기 80cm이상)	마리	400,000	200.00	
	송어(작은고기4~5cm)	마리	300	0.15	
송어(큰고기)	마리	2,393	1.20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잉어(작은고기3~5cm)	마리	150	0.08	
	잉어(큰고기)	마리	8,000	4.00	
	뱀장어(작은고기4~5cm,0.2g)	마리	2,240	1.12	
	뱀장어(큰고기)	마리	11,896	5.95	
	향어(작은고기3~5cm)	마리	66	0.03	
	향어(큰고기)	마리	8,688	4.34	
	가물치(작은고기5~7cm)	마리	280	0.14	
	가물치(큰고기)	마리	8,000	4.00	
	메기(작은고기5~7cm)	마리	143	0.07	
	메기(큰고기)	마리	806	0.40	
	틸라피아(작은고기5~6cm)	마리	240	0.12	
	틸라피아(큰고기)	마리	2,800	1.40	
	은어(작은고기3~4cm)	마리	210	0.11	
	은어(큰고기)	마리	1,160	0.58	
	미꾸리(작은고기3~4cm)	마리	40	0.02	
	미꾸리(큰고기)	마리	80	0.04	
	자라(작은고기3~4cm)	마리	3,200	1.60	
	자라(큰고기)	마리	39,558	19.78	
	산천어(작은고기4~5cm)	마리	560	0.28	
	산천어(큰고기)	마리	3,200	1.60	
	동자개(작은고기5~6cm)	마리	225	0.11	
	동자개(큰고기)	마리	2,200	1.10	
	붕어(작은고기3~5cm)	마리	100	0.05	
	붕어(큰고기)	마리	2,400	1.20	
	우렁이(각고1.3cm내외)	kg	3,395	1.70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마리	200	0.10	
	대농갱이(성어 1/2고기)	마리	3,200	1.60	
	철갑상어(작은고기 10~15cm)	마리	1,600	0.80	
	철갑상어(성어 1/2고기)	마리	9,000	4.50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자원기준 자수	비고
	쏘가리(작은고기 3~5cm)	마리	985	0.49	
	쏘가리(성어 1/2코기)	마리	12,000	6.00	
	버들치(작은고기 2~3cm)	마리	12	0.01	
	버들치(성어)	마리	60	0.03	
	비단잉어(성어)	마리	10,000	5.00	
	열대어 구피(드래곤헤드-3cm)	마리	100	0.05	
	열대어 구피(브론즈-3cm)	마리	160	0.08	
	열대어 구피(점원-3cm)	마리	280	0.14	
	열대어 구피(슈퍼화이트-3cm)	마리	1,200	0.60	
	열대어 구피(플레드-3cm)	마리	1,200	0.60	
	열대어 플레티(2cm)	마리	100	0.05	
	열대어 엔젤(3cm)	마리	280	0.14	
	열대어 고리도라스(2cm)	마리	60	0.03	
	열대어 제부라(3cm)	마리	40	0.02	
	열대어 블랙테트라(2cm)	마리	60	0.03	
	황복(작은고기 4~5cm)	마리	200	0.10	
	황복(성어 25cm)	마리	12,000	6.00	
	꼭지(작은고기 3~4cm)	마리	1,134	0.57	
	꼭지(성어 10~20cm)	마리	800	0.40	

2. 공공시설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가. 공통사항				
(1) 떼	출떼	m ²	12,183	
	평떼	"	19,022	
(2) 석축	메쌓기(H=3m미만)	"	288,333	
	(H=3m~6m)	"	403,665	
	찰쌓기(H=3m미만)	"	272,903	
	(H=3m~6m)	"	382,063	
(3)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sigma_{28}=210\text{kg/cm}^2$)-레미콘	m ³	155,171	
	($\sigma_{28}=180\text{kg/cm}^2$)- "	"	149,564	
	($\sigma_{28}=210\text{kg/cm}^2$)-인력비법	"	673,241	
	($\sigma_{28}=180\text{kg/cm}^2$)- "	"	667,634	
	무근콘크리트($\sigma_{28}=210\text{kg/cm}^2$)-레미콘	"	151,158	
	($\sigma_{28}=180\text{kg/cm}^2$)- "	"	145,494	
	($\sigma_{28}=135\text{kg/cm}^2$)- "	"	143,097	
	($\sigma_{28}=180\text{kg/cm}^2$)-인력비법	"	619,966	
	($\sigma_{28}=135\text{kg/cm}^2$)- "	"	617,590	
(4) 철근가공조립	보통	톤	3,565,023	
(5) 자푸집	4회사용(수로, 측구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m ²	71,883	
(6) 전치블럭쌓기	스톤무늬전치	m ²	323,508	
(7) 돌량태양벽	케비온 설치(1.0×1.0×2.0)	m ³	284,704	
	케비온 설치(1.0×1.0×1.5)	"	282,053	
(8) 식생매트	침식방지 식생매트(18mm)	m ²	27,853	
	침식방지 식생매트(25mm)	"	29,613	
(9) 트류판 설치 및 해체	100×150×2000	m ²	219,199	
(10) 건축물 철거비		m ²	27,000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나. 도로 및 교량				
(1) 도 로	확포장(비포장-2차선, 노폭=9m)	m	5,750,000	
	(2-4차선, 노폭=18.5m)	"	11,500,000	
	신 설(2차선, 노폭=11m)	"	5,890,500	
	(4차선, 노폭=18.5m)	"	18,700,000	
(2)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군도	m	2,263,210	
	농어촌도로	"	1,069,163	
- 일반도로	평지부 편측설치(B=3.0m)	m	480,315	
	평지부 양측설치(B=1.5m×2)	"	679,108	
	성토부 편측설치(B=3.0m)	"	645,770	
	성토부 양측설치(B=1.5m×2)	"	871,728	
	절토부 편측설치(B=3.0m)	"	714,915	
	절토부 양측설치(B=1.5m×2)	"	984,089	
	- 제방도로	하천(B=3.0m)	"	261,765
	방조제(B=3.0m)	"	459,324	
- 도로다이아트(도시지역)	편측(B=3.0m)	"	388,943	
	*도로다이아트: 기존도로의 차선조정 및 갓길포장	"	630,953	
(4) 교 량	Slab교(교각6m)-2차선(10m)	m	33,791,670	
	Slab교(교각6m)-4차선(19.5m)	"	63,830,325	
	P.CBeam교(교각7m)-2차선(10m)	"	19,207,860	
	P.CBeam교(교각7m)-4차선(19.5m)	"	36,280,725	
	P.CBox교(교각15m)-4차선(19.5m)	"	63,434,475	
	Steel Box교(교각10m)-4차선(19.5m)	"	47,458,125	
	다. 도로시설물			
(1) 토공	도로사태	m ³	12,117	
	침식 및 유실	"	50,637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2) 포장공	아스콘포장 (B.B가층)	a	7,266,975	
	콘크리트포장(T=28cm, 보조기층:32cm)	"	9,291,160	
(3) 구조물공	옹벽 : 중력식(H=2m)	m	715,413	
	(H=3m)	"	1,089,445	
	(H=4m)	"	1,631,049	
	역 T형(H=4m)	"	2,536,943	
	(H=5m)	"	3,348,365	
	(H=6m)	"	5,005,951	
	(H=7m)	"	6,206,440	
	자생토낭 보강토옹벽(H=3m)	"	1,202,116	
	(H=5m)	"	1,852,353	
	암까:구 체(1.0×1.0m)	"	2,021,076	
	(1.5×1.5m)	"	2,409,150	
	(1.5×1.5m×2련)	"	4,031,109	
	(1.5×2.0m)	"	2,407,805	
	(2.0×2.0m)	"	3,286,207	
	(2.0×2.0m×2련)	"	5,408,773	
	(2.0×2.0m×3련)	"	7,082,176	
	(2.5×2.5m)	"	4,943,261	
	(2.5×2.5m×2련)	"	9,342,432	
	(3.0×3.0m)	"	6,470,019	
	(3.0×3.0m×2련)	"	10,976,067	
	(3.5×3.5m×2련)	"	12,245,621	
	날개벽(1.0×1.0m)	개소	4,505,445	
(1.5×1.5m)	"	6,469,573		
(2.0×2.0m)	"	9,743,858		
(2.5×2.5m)	"	11,459,729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3.0×3.0m)	"	21,914,548	
	배수관:홍관(D=600mm)	m	169,598	
	(D=800mm)	"	287,418	
	(D=1,000mm)	"	589,116	
	(D=1,200mm)	"	629,165	
(4) 배수구조물	측 구 L형 (B=50cm)	m	118,223	
	L형 (B=100cm)	"	324,153	
	L형측구 옹벽(B=45cm)	"	622,846	
	산마루 측구(H=45cm)	"	195,339	
(5) 부대시설	낙석 방지책(H=3m)	m	513,326	
	방 호 벽 (콘크리트)	"	314,013	
	가 드 레 일 (L=4m)	"	79,180	
라. 하천제방				
(1) 하천제방축조	국가하천(축제+블록)	m	4,696,444	
- 사리부설(축제)	(축제+블럭+돌망태)	"	5,189,837	
	(축제+블럭+사석)	"	4,953,236	
	지방하천-대규모(축제+블럭)	"	2,989,713	
	(축제+블럭+돌망태)	"	3,281,809	
	(축제+블럭+사석)	"	3,120,592	
	지방하천-중소규모(축제+블럭)	"	2,031,124	
	(축제+블럭+돌망태)	"	2,326,832	
	(축제+블럭+사석)	"	2,162,003	
- 사리부설(보축)	국가하천(보축)	"	2,403,395	
	지방하천-대규모(보축)	"	1,609,879	
	지방하천-중소규모(보축)	"	891,469	
- 콘크리트포장(축제)	국가하천(축제+블록)	"	5,015,067	
	(축제+블럭+돌망태)	"	5,508,460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콘크리트포장(보축)	(축제+블럭+사석)	"	5,271,859	
	지방하천-대규모(축제+블럭)	"	3,224,151	
	(축제+블럭+돌망태)	"	3,516,247	
	(축제+블럭+사석)	"	3,355,030	
	지방하천-중소규모(축제+블럭)	"	2,212,173	
	(축제+블럭+돌망태)	"	2,507,881	
	(축제+블럭+사석)	"	2,343,052	
	국가하천(보축)	"	2,722,018	
	지방하천-대규모(보축)	"	1,844,317	
	지방하천-중소규모(보축)	"	1,072,518	
마. 하천시설물				
(1) 토공 및 호안공				
	성 토	m ³	33,258	
	돌망태(8-95cm×45)	m ³	78,660	
	호안블럭(40×25×12)	"	71,912	
	돌붙임(공장35cm)	"	276,161	
	(공장45cm)	"	284,528	
	상하철망 고정볼트 스톤매트리스(일반형)	"	148,079	
	사 석	m ³	102,800	
(2) 구조물공				
	배수문구 체(1.5×1.5m)	m	2,409,150	
	문 비 - 편좌형 (")	개소	56,760,704	
	문 비 - 완전자동형 (")	"	15,152,000	
	날개벽 (")	"	6,469,573	
	배수문구 체(1.8 ×1.8m)	m	2,954,869	
	문 비 - 편좌형 (")	개소	69,279,936	
	문 비 - 완전자동형 (")	"	17,696,000	
	날개벽 (1.8×1.8m)	"	8,200,555	
	배수문구 체(2.0×2.0m)	m	3,286,207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문 비 - 핀잭형 (")	개소	73,707,456	
	문 비 - 완전자동형(")	"	20,400,000	
	날개벽 (")	"	9,715,709	
	배수문구 체(2.0×2.0m)×2련	m	5,408,773	
	문 비 - 핀잭형 (")	개소	141,894,912	
	날개벽 (")	"	10,344,070	
	배수문구 체 (2.5×2.5m)	m	4,943,261	
	문 비 - 핀잭형 (")	개소	93,175,680	
	문 비 - 완전자동형(")	"	30,240,000	
	날개벽 (")	"	11,459,729	
	배수문구 체(2.5×2.5m)×2련	m	9,342,432	
	문 비 - 핀잭형 (")	개소	180,831,360	
	날개벽 (")	개소	11,459,729	
	배수문구 체 (2.5×2.5m)×3련	m	12,901,335	
	문 비 - 핀잭형 (")	개소	268,487,040	
	날개벽 (")	"	19,470,496	
	배수문구 체 (3.0×3.0m)	m	6,470,019	
	문 비 - 핀잭형 (3.0×3.0m)	개소	105,742,080	
	문 비 - 완전자동형 (")	"	37,600,000	
	날개벽 (")	"	21,914,548	
	배수문구 체 (3.0×3.0m)×2련	m	10,976,067	
	문 비 - 핀잭형 (")	개소	205,964,067	
	날개벽 (")	"	24,349,498	
	배수문구 체 (3.0×3.0m)×3련	m	15,660,201	
	문 비 - 핀잭형 (")	개소	306,186,240	
	날개벽 (")	"	26,565,992	
	권양대 : (2×2)m×2련, H=6m기준	식	38,755,130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바. 상하수도시설				
(1) 상수도시설	펌프모터: 20HP(양정 30~40m기준)	대	4,435,225	
	30HP	"	5,905,502	
	40HP	"	9,493,599	
	50HP	"	11,910,796	
	75HP	"	17,956,008	
	100HP	"	24,812,865	
	150HP	"	53,256,776	
	200HP	"	72,774,439	
	250HP	"	86,041,413	
	송배수관 : 300mm - 강관 (토사구간)	m	631,184	
	350mm	"	669,064	
	400mm	"	760,248	
	450mm	"	831,293	
	500mm	m	896,271	
	600mm	"	942,652	
	700mm	"	1,183,158	
	800mm	"	1,382,368	
	900mm	"	1,554,342	
	1,000mm	"	1,861,396	
	1,100mm	"	2,032,444	
	1,200mm	"	2,315,026	
	1,350mm	"	2,706,662	
	1,500mm	"	3,170,503	
	1,650mm	"	3,666,924	
	1,800mm	"	4,122,817	
	2,000mm	"	4,898,632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2,200mm	"	5,649,360	
	2,400mm	"	7,219,921	
	80mm - 주철관 (토사구간)	m	246,580	
	100mm	"	256,618	
	150mm	"	293,385	
	200mm	"	324,430	
	250mm	"	355,897	
	300mm	"	397,381	
	350mm	"	451,683	
	400mm	"	526,480	
	450mm	"	579,600	
	500mm	"	632,040	
	600mm	"	777,010	
	700mm	"	938,207	
	800mm	"	1,136,918	
	900mm	"	1,365,928	
	1,000mm	"	1,629,259	
	16mm - PE관 (토사구간)	m	50,851	
	20mm	"	52,143	
	25mm	"	52,834	
	30mm	"	54,838	
	40mm	"	57,452	
	50mm	"	61,695	
	75mm	"	165,748	
	100mm	"	185,579	
	150mm	"	249,796	
	200mm	"	303,625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250mm	"	376,743	
	300mm	"	430,575	
	350mm	"	447,280	
	400mm	"	542,953	
	450mm	"	617,682	
	500mm	"	696,552	
	600mm	"	873,328	
	16mm - 내충격PVC관 (토사구간)	m	50,675	
	20mm	"	51,651	
	25mm	"	54,401	
	32mm	"	56,452	
	40mm	"	59,754	
	50mm	"	60,454	
	65mm	"	64,694	
	76mm	"	217,865	
	100mm	"	228,608	
	150mm	"	256,706	
	200mm	m	283,032	
	250mm	"	319,933	
	300mm	"	359,281	
	350mm	"	301,361	
	400mm	"	379,715	
	150mm - GRP관 (토사구간)	m	301,361	
	200mm	"	307,301	
	250mm	"	336,936	
	300mm	"	364,971	
	350mm	"	411,409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400mm	"	474,625	
	450mm	"	514,110	
	500mm	"	534,372	
	600mm	"	612,189	
	700mm	"	715,972	
	800mm	"	854,832	
	900mm	"	1,002,206	
	1,000mm	"	1,190,915	
	1,100mm	"	1,323,455	
	16mm - STS관 (토사구간)	m	60,526	
	20mm	"	62,414	
	25mm	"	64,774	
	32mm	"	67,056	
	40mm	"	69,747	
	50mm	"	72,906	
	65mm	"	81,665	
	80mm	"	236,025	
	100mm	"	246,804	
(2) 하수도시설	측구(L형, B=50cm)	m	104,505	
	(U형, B=45cm)	"	115,130	
	(LU형, B=45cm)	"	122,109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470,520	
	콘크리트관(D=300mm) - 비포장구간	"	512,740	
	(D=350mm)	"	546,464	
	(D=400mm)	"	580,188	
	(D=450mm)	"	602,525	
	(D=500mm)	"	624,861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600mm)	"	705,821	
	(D=700mm)	"	782,918	
	(D=800mm)	"	854,676	
	(D=900mm)	"	945,775	
	(D=1000mm)	"	1,051,853	
	(D=1100mm)	"	1,188,358	
	(D=1200mm)	"	1,313,909	
	(D=1350mm)	"	1,519,849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735,589	
	(D=300mm)	"	782,541	
	(D=350mm)	"	813,843	
	(D=400mm)	"	859,007	
	(D=450mm)	"	901,957	
	(D=500mm)	"	912,820	
	(D=600mm)	"	1,016,585	
	(D=700mm)	"	1,102,578	
	(D=800mm)	"	1,183,365	
	(D=900mm)	"	1,283,451	
	(D=1000mm)	"	1,398,649	
	(D=1100mm)	"	1,557,399	
	(D=1200mm)	m	1,691,805	
	(D=1350mm)	"	1,910,605	
	콘크리트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	773,676	
	콘크리트관(D=300mm) - 포장구간(아스팔트, 콘크리트)	"	1,115,863	
	(D=350mm)	"	855,576	
	(D=400mm)	"	1,224,758	
	(D=450mm)	"	940,682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500mm)	"	1,178,767	
	(D=600mm)	"	1,305,244	
	(D=700mm)	"	1,406,703	
	(D=800mm)	"	1,422,383	
	(D=900mm)	"	1,511,653	
	(D=1000mm)	"	1,542,172	
	(D=1100mm)	"	1,757,318	
	(D=1200mm)	"	1,792,833	
	(D=1350mm)	"	1,909,332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비포장	m	388,986	
	강 관(D=300mm) - 비포장구간	"	707,247	
	(D=350mm)	"	502,145	
	(D=400mm)	"	827,275	
	(D=450mm)	"	653,547	
	(D=500mm)	"	935,411	
	(D=600mm)	"	1,068,860	
	(D=700mm)	"	1,206,659	
	(D=800mm)	"	1,373,571	
	(D=900mm)	"	1,509,424	
	(D=1000mm)	"	1,730,822	
	(D=1100mm)	"	1,990,647	
	(D=1200mm)	"	2,234,280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552,481	
	(D=300mm)	"	613,163	
	(D=350mm)	"	672,032	
	(D=400mm)	"	753,033	
	(D=450mm)	"	792,837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500mm)	"	873,146	
	(D=600mm)	"	1,077,305	
	(D=700mm)	"	1,236,464	
	(D=800mm)	"	1,381,207	
	(D=900mm)	"	1,504,301	
	(D=1000mm)	"	1,706,084	
	(D=1100mm)	"	1,930,518	
	(D=1200mm)	"	2,190,222	
강	관(D=250mm) - 토피 2m기준 콘크리트	m	576,452	
강	관(D=300mm) - 포장구간(아스팔트, 콘크리트)	"	977,038	
	(D=350mm)	"	696,839	
	(D=400mm)	"	1,106,094	
	(D=450mm)	"	819,659	
	(D=500mm)	"	1,223,371	
	(D=600mm)	"	1,379,624	
	(D=700mm)	"	1,526,319	
	(D=800mm)	"	1,702,260	
	(D=900mm)	"	1,847,090	
	(D=1000mm)	"	2,077,609	
	(D=1100mm)	"	2,359,688	
	(D=1200mm)	"	2,612,176	
	플라스틱관(D=200mm) - 비포장구간	m	476,678	
	(D=300mm)	"	525,101	
	(D=350mm)	"	375,467	
	(D=400mm)	m	625,778	
	(D=450mm)	"	490,940	
	(D=500mm)	"	711,507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600mm)	"	810,869	
	(D=700mm)	"	919,311	
	(D=800mm)	"	1,030,780	
	(D=900mm)	"	1,120,780	
	(D=1000mm)	"	1,252,157	
	(D=1200mm)	"	1,519,329	
	플라스틱관(D=250mm) - 토피 2m기준, 아스팔트	m	491,319	
	(D=300mm)	"	536,769	
	(D=350mm)	"	593,227	
	(D=400mm)	"	684,767	
	(D=450mm)	"	681,988	
	(D=500mm)	"	791,376	
	(D=600mm)	"	891,708	
	(D=700mm)	"	978,203	
	(D=800mm)	"	1,148,682	
	(D=900mm)	"	1,307,330	
	(D=1000mm)	"	1,539,776	
	(D=1200mm)	"	1,925,826	
	플라스틱관(D=200mm) - 포장구간(아스팔트, 콘크리트)	m	739,259	
	(D=300mm)	"	794,902	
	(D=350mm)	"	633,218	
	(D=400mm)	"	904,597	
	(D=450mm)	"	719,623	
	(D=500mm)	"	999,476	
	(D=600mm)	"	1,121,644	
	(D=700mm)	"	1,238,972	
	(D=800mm)	m	1,359,468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900mm)	"	1,458,352	
	(D=1000mm)	"	1,598,943	
	(D=1200mm)	"	1,897,235	
	사각형거(BOX)1련(H1.0xW1.0) - 비포장구간(2련박스는 동일규격의 1.5배)	m	1,813,280	
	(H1.0×W1.2)	"	1,980,997	
	(H1.2×W1.2)	"	2,008,266	
	(H1.0×W1.5)	"	2,087,044	
	(H1.5×W1.5)	"	2,235,747	
	(H1.5×W1.8)	"	2,493,065	
	(H1.8×W1.8)	"	2,688,377	
	(H1.5×W2.0)	"	2,712,639	
	(H2.0×W2.0)	"	3,180,065	
	(H1.5×W2.5)	"	3,443,537	
	(H2.0×W2.5)	"	3,790,171	
	(H2.5×W2.5)	"	4,445,958	
	(H1.5×W3.0)	"	4,058,779	
	(H2.0×W3.0)	"	4,541,703	
	(H2.5×W3.0)	"	5,297,975	
	(H3.0×W3.0)	"	5,625,868	
	사각형거(BOX)1련(H1.0×W1.0) - 포장구간(2련박스는 동일규격의 1.5배)	m	2,098,936	
	(H1.0×W1.2)	"	2,266,643	
	(H1.2×W1.2)	"	2,293,922	
	(H1.0×W1.5)	"	2,432,231	
	(H1.5×W1.5)	"	2,580,933	
	(H1.5×W1.8)	"	2,838,251	
	(H1.8×W1.8)	"	3,033,563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H1.5×W2.0)	"	3,057,825	
	(H2.0×W2.0)	"	3,525,251	
	(H1.5×W2.5)	m	3,966,580	
	(H2.0×W2.5)	"	4,313,203	
	(H2.5×W2.5)	"	4,968,990	
	(H1.5×W3.0)	"	4,581,821	
	(H2.0×W3.0)	"	5,064,746	
	(H2.5×W3.0)	"	5,821,007	
	(H3.0×W3.0)	"	6,148,911	
	압송주철관(D=80mm) - 비포장구간	m	91,404	
	(D=100mm)	"	102,960	
	(D=150mm)	"	139,786	
	(D=200mm)	"	172,293	
	(D=300mm)	"	248,738	
	(D=400mm)	"	348,039	
	(D=500mm)	"	453,129	
	(D=600mm)	"	563,069	
	(D=700mm)	"	708,878	
	(D=800mm)	"	860,005	
	압송주철관(D=80mm) - 포장구간(아스팔트, 콘크리트)	m	309,684	
	(D=100mm)	"	323,665	
	(D=150mm)	"	366,708	
	(D=200mm)	"	405,664	
	(D=300mm)	"	494,561	
	(D=400mm)	"	606,519	
	(D=500mm)	"	724,142	
	(D=600mm)	"	846,789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D=700mm)	"	1,005,274	
	(D=800mm)	"	1,169,007	
	맨홀 (H=2.0m, D=1.2m)	개소	1,202,827	
	(H=2.0m, D=1.5m)	"	1,807,028	
사: 국립공원시설				
	국립공원 탐방로(B=1.5m)	km	506,001,602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 토	m ³	18,792	
	중심점토	"	19,697	
	돌 붙 임(매붙임)	m ²	183,546	
	준설	m ³	14,938	
(2) 용배수로	토공수로	m ³	27,153	
(3) 방조제	성 토	m ³	33,705	
(4) 구조물공	개 거(0.5×0.5m)	m	291,460	
	(0.6×0.6m)	"	346,095	
	(0.8×0.8m)	"	433,004	
	(1.0×1.0m)	"	532,674	
	유공관 (D=600mm)	"	1,093,109	
	(D=800mm)	"	1,293,336	
	(D=900mm)	m	1,464,622	
	(D=1,000mm)	m	1,653,065	
- 배수갑문	구체 L=20m(1.5×1.5m)-날개벽포함	개소	62,218,644	
	(1.8×1.8m)- "	"	89,163,608	
	(2.1×2.1m)- "	"	121,839,055	
	자동문비 (1.5×1.5m)	"	1,476,307	
	(1.8×1.8m)	"	1,635,293	
	(2.1×2.1m)	"	2,139,037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 취입보	비상문비 (1.5×1.5m)	"	9,356,777	
	(1.8×1.8m)	"	13,058,796	
	(2.1×2.1m)	"	14,907,885	
	언 체(H=0.8m)	m	2,458,447	
	(H=1.0m)	"	2,471,616	
	(H=1.5m)	"	3,216,352	
	취입수문(0.6×0.6m) - 문비포함	개소	4,916,415	
자: 항만어항시설				
(1) 사석운반투하	0.015~0.03m³(육상수상)	m³	54,964	
	0.015~0.03m³(육상수중)	"	66,502	
	0.015~0.03m³(해상수상)	"	71,709	
	0.015~0.03m³(해상수중)	"	78,531	
	0.2~0.5m³(육상수상)	"	88,478	
	0.2~0.5m³(육상수중)	"	95,850	
	0.2~0.5m³(해상수상)	"	126,738	
	0.2~0.5m³(해상수중)	"	128,333	
	0.6~1.0m³(육상수상)	"	88,751	
	0.6~1.0m³(육상수중)	m³	96,249	
	0.6~1.0m³(해상수상)	"	129,806	
	0.6~1.0m³(해상수중)	"	138,227	
(2) 피복석고르키	0.2~1.0m³(육상수상)	m³	54,763	
	0.2~0.5m³(육상수중)	"	139,536	
	0.2~0.5m³(해상수중)	"	155,179	
	0.6~1.0m³(육상수중)	"	174,965	
	0.6~1.0m³(해상수중)	"	232,129	
(3) 속고르키	0.015~0.03m³(수상)	"	54,094	
	0.015~0.03m³(수중)	"	81,893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0.2~1.0m급(수상)	"	107,755	
	0.2~0.5m급(육상수중)	"	125,194	
	0.2~0.5m급(해상수중)	"	138,222	
	0.6~1.0m급(육상수중)	"	143,451	
	0.6~1.0m급(해상수중)	"	206,050	
(4) T.T.P	제작운반커치 (4 톤급) - 수상	개	515,674	
	" (5 톤급) - "	"	625,131	
	" (6.3 톤급) - "	"	779,440	
	" (8 톤급) - "	"	928,471	
	" (10 톤급) - "	개	1,132,907	
	" (12.5 톤급) - "	"	1,398,001	
	" (16 톤급) - "	"	1,674,966	
	" (20 톤급) - "	"	2,027,093	
	" (25 톤급) - "	"	2,463,645	
	" (32 톤급) - "	"	2,991,188	
	" (40 톤급) - "	"	3,678,329	
	" (50 톤급) - "	"	4,391,834	
	" (64 톤급) - "	"	5,446,934	
	제작운반커치 (4 톤급) - 수중	개	698,989	
	" (5 톤급) - "	"	826,922	
	" (6.3 톤급) - "	"	1,015,528	
	" (8 톤급) - "	"	1,160,609	
	" (10 톤급) - "	"	1,450,761	
	" (12.5 톤급) - "	"	1,846,411	
	" (16 톤급) - "	"	2,123,388	
	" (20 톤급) - "	"	2,479,477	
	" (25 톤급) - "	"	2,952,944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 (32 톤급) - "	"	3,502,913	
	" (40 톤급) - "	"	4,232,248	
	" (50 톤급) - "	"	4,985,327	
	" (64 톤급) - "	"	6,143,291	
차. 학교시설				
(1) 담 장	벽돌담장	m ²	313,845	
	블럭담장	"	163,209	
	철망웬스	"	152,912	
카. 산림시설				
	산 사 태	ha	152,862,400	
	야계사방(사방시설 피해복구)	km	297,167,000	
	사 방 댐(L > 50m)	개소	361,601,000	
	(L : 40m ~ 50m)	개소	298,769,310	
	(L : 30m ~ 40m)	개소	267,388,410	
	(L : 20 ~ 30m)	개소	251,734,500	
	(L < 20m)	개소	220,217,880	
	임 도(B=4m)	km	209,111,836	
	자연휴양림시설물 - 숲속의집	m ²	1,512,000	
	- 화 장 실	"	1,026,000	
	수목원시설 - 묘포장	m ²	5,087	
	- 유리온실	"	104,000	
	- 초 본 원	"	173	
	- 교관목원	"	1,560	
	- 생태관찰로	km	163,148,700	
	- 휴게실	m ²	1,907,751	
	- 화장실	"	1,333,800	
	가로수(월암수류, 양빛나무 흉고직경 8cm)-14cm피만 적용	본	241,806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타: 철도시설	가로수(활엽수류, 양벚나무) 흉고직경 15cm-15cm이상 적용	"	766,134	
	가로수(침엽수류, 소나무) 흉고직경 8cm-14cm미만 적용	"	276,575	
	가로수(침엽수류, 소나무) 흉고직경 15cm-15cm이상 적용	"	649,134	
	궤도유실(단선)	m	625,000	
	독 유 실	m ³	275,000	
	노반침하	"	135,000	
	각기비탈붕괴(토사)	"	147,000	
	(암석)	"	295,000	
	궤도매몰(단선)	"	174,000	
	도상유실	"	609,000	
교대, 교각도괴(H=8m, B=12m)(단선)	기	131,734,000		
	교대 및 교각도괴(복선) (H=11.0m)	"	323,921,000	
파: 소규모시설				
(1) 농로	토공	m ³	16,259	
	콘크리트포장(T=20cm)	a	6,902,340	
(2) 소교량	상부(Slab) : B=3m, H=3m	m	2,592,270	
	H=5m	"	2,924,988	
	B=4m, H=3m	"	3,410,889	
	상부(Slab) : B=4m, H=5m	"	3,854,513	
	B=5m, H=3m	"	4,229,509	
	H=5m	"	4,784,039	
	B=6m, H=3m	"	5,048,128	
	H=5m	"	5,713,564	
	하부(교대) : B=3m, H=3m	기	12,715,280	
	H=5m	"	15,685,003	
B=4m, H=3m	"	16,736,860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H=5m	"	20,925,315	
	B=5m, H=3m	"	20,758,440	
	H=5m	"	25,994,009	
	B=6m, H=3m	"	24,750,020	
	H=5m	"	31,062,702	
	하부(교각) : B=3m, H=3m	기	5,526,400	
	H=5m	"	8,517,195	
	B=4m, H=3m	"	7,505,392	
	H=5m	"	11,643,966	
	B=5m, H=3m	"	9,555,839	
	H=5m	"	14,770,893	
	B=6m, H=3m	"	11,570,481	
	H=5m	"	17,897,664	
	세월교: B=5m, Ø 600mm	m	1,585,625	
	Ø 800mm	"	2,156,733	
	Ø1,000mm	"	2,975,063	
하: 소하천				
(1)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	m	1,567,060	
(2) 기존구조물철거	석축-찰쌓기 철거	m ²	15,949	
	석축-매쌓기 철거	m ²	12,416	
	호안블럭 헐기	m ²	1,000	
	돌망태 헐기	m ²	2,735	
(3) 토목용섬유부설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350g/m ²)	m ²	4,243	
	필터매트부설/하천호안용(500g/m ²)	m ²	4,675	
(4) 비탈면보호공	씨앗뿜어붙이기(Seed spray)/성토면	m ²	2,333	
	저적덮기	m ²	3,125	
(5) 호안사공	블록붙임/장방형(400×250×120mm)	m ²	43,352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블록붙임/환경블록(400×400×120mm)	m ²	41,336	
	식생블록 쌓기	m ²	360,308	
	식생매트 붙임	m ²	27,853	
	자연석 쌓기(300×400×500)	m ²	251,346	
	(500×700×800)	"	326,138	
	(인력, 300×400×500)	"	1,110,243	
거 준 시 설				
(1) 병영건물	통합막사(철근콘크리트조, 3,300m ²)	m ²	1,463,447	
	(" , 1,650m ²)	"	1,630,546	
	(" , 660m ²)	"	1,797,645	
	취사식당(철근콘크리트조, 363m ²)	"	1,759,329	
	목 육 텃(철근콘크리트조, 165m ²)	"	2,035,512	
	창 고(철근콘크리트조, 297m ²)	"	1,363,308	
	체 육 관(철근콘크리트조, 165m ²)	"	1,747,206	
	화 장 실(조적 스라브조, 24m ²)	"	1,475,914	
(2) 기타시설	탄 약 고(이그루대형, 208m ²)	"	1,629,217	
	(소 형, 50m ²)	"	1,173,079	
	무 기 고(반지하형, 66m ²)	"	1,078,545	
	정 비 고(철근콘크리트조-차량, 119m ²)	"	1,548,971	
	검 문 소(철근콘크리트조, 66m ²)	"	1,099,991	
	위병맞면회사설(철근콘크리트조, 100m ²)	"	1,161,806	
	고가초소(철근콘크리트조, 12m ²)	"	992,759	
	울 타 리(블록담장, 6"×13단)	m	192,993	
	(철책울타리 Y형, 3.3×3m)	"	242,197	
	(쇠고리철조망, 2.65×3m)	"	142,539	
	(철조망, 2.65×3m)	"	45,406	
	심 정(150m, 100톤/일)	개소	111,399,300	

IV.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너. 문화재시설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m ²	11,517,697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989,201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515,034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6,485,387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988,765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945,615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4,056,558	
	" (도리이상 해체보수)	"	2,028,273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626,124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3,287,187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8,568,949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499,186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9,399,225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7,707,637	
	전시관(철충식기와)	"	8,006,530	
	일각문, 협문	"	9,643,414	
	사주문	"	5,240,980	
	초가집	"	2,976,673	
(3) 기타시설				
-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m ²	368,686	
	" (장대석시공)	"	1,560,287	
	보수(막돌 시공)	"	287,244	
	" (장대석시공)	"	1,092,199	
-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75,014	
	" (사고석담장)	"	4,547,133	
	" (토 담)	"	649,582	

종 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 (돌 담)	"	656,077	
	보수(막돌 담장)	"	612,506	
	" (사고석담장)	"	3,182,975	
	" (토 담)	"	584,621	
	" (돌 담)	"	459,254	
-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89,747	
	" (장 대 석)	"	1,325,153	
	" (흙관 매설)	"	193,574	
	보수(자 연 석)	"	272,823	
	" (장 대 석)	"	662,570	
	" (흙관 보수)	"	135,499	
-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9,170,656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521,126	
-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50,023	
	보수(자연석, h=2m)	"	499,798	
- 공공건축물	균열보수(철근콘크리트)	m	27,130	
	도장(내외벽)	m ²	7,149	
	흡음텍스(철거 및 재설치)	개	13,111	
	계단(철거 및 재설치)	m ²	648,691	
	조적벽(철거 및 재설치)	m ²	141,062	
	벽체타일(철거 및 재설치)	m ²	90,866	
터. 임시주거 시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동	40,000,000	

V. 관련 규정 및 지침

1.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을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181
2.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185
3.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 187
4. 피해신고·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지침 194
5.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 지침 202
6.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내용 수록 208

1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26호

개정 2022. 1. 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을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평가 결과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5퍼센트 가산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퍼센트 가산
3.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결과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1퍼센트 가산
4.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 가. 전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퍼센트 가산
 - 나. 전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퍼센트 차감
5.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침수흔적도 미작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퍼센트 차감
6.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 가.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1퍼센트 가산
- 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1퍼센트 차감
7.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미수립한 시·군: 3퍼센트 차감
8.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 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지역의 재난 위험도를 미 반영한 시·군·구: 1퍼센트 차감
- 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을 미 반영한 시·군·구: 0.5퍼센트 차감
- 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를 미 실시한 시·군·구: 0.5퍼센트 차감
9. 제3조제6호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 가. 전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퍼센트 가산
- 나. 전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퍼센트 차감
10. 제3조제7호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대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피해액과의 비율($\text{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 \div \text{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가. 피해액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퍼센트 차감

나.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퍼센트 차감

다.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차감

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
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0호

2019. 4.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구호비, 학자금 등 간접지원: 100
2. 주택, 농업, 임업, 염생산업: 100
3.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100

3. 유실·전파·반파된 주택의 세입자 보조: 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 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3.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

④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훈령 제180호

2021. 2. 2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편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소속하에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이하 "재난피해조사단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자격)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임무)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 사례 등 수집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
3. 재난수습·복구 방안 검토
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 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간 등) ①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재난피해조사단 조사 전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직의 편성 및 운영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 피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 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
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
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착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요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협조체계) 재난피해조사단은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제8조 관련)

1. 재난피해조사단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가. 자연재난	7일 이내	피해규모 및 현지어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회재난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구 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가. 자연재난	공공 시설 재해 종료일부터 7일 이내	1)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 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2) 해당 사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유 시설 재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4)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회재난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사도대책본부장이 정함	해당 사도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하 “별지 생략”

4 피해신고·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지침

가. 피해신고 요령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장기간 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피해신고는 해당 부서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피해신고서를 NDMS로 조회***하여 처리하여야 함
 - * 인명피해 :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어선피해 : 선적지 시·군·구 담당부서
 - 주택 및 농업업 피해 : 피해 발생지 시·군·구 담당부서

**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safekorea.go.kr) 내 참여와신고 → 국민참여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활용

*** NDMS 복구지원시스템 → 자연재난 → 인터넷피해신고서조회 메뉴 활용

○ 양식업(해조류의 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기간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 신고 :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20일 이내

- 출하·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나. 피해조사 요령

◆ 일반사항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고,
 -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원해상(먼 바다)에서 침몰한 선박 피해 보고는 관할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소재한 시·도에서 피해 보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의 피해조사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시설 및 이재민이 복구계획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락 시는 기준령 제8조를 준용,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피해조사에 포함하나, 불법체류자·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단기체류자*, 긴급 상륙(입국)**한 외국인은 제외
 - * 관광·통과, 일시취재 또는 보도활동, 친선경기, 행사나 회의 참가를 위한 단기방문, 강의·강연, 연구, 용역계약, 농작물 재배·수확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영리 활동 등
 - **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긴급 상륙한 사람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와 그 밖에 상륙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 사유시설(산사태 피해는 제외) 및 공공시설 중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도지사 책임 하에 조사 실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 인명 및 선박·어망 피해 발생 시는 피해자 주소지 및 선적지의 시·도지사 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가 발생한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 통보 또는 보고가 늦어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락 시는 피해 발생 지역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 조치하여야 함
 - ※ 인명 피해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피해 발생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 보고 및 지원
- 1개소당 피해는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를 의미함
- 인명, 농작물·수산생물·산림작물·가축, 동산, 공장 피해액은 피해조사에서 제외
- 피해 입력은 소관 부처별, 시설별로 정확하게 입력
 - ※ 도로 : 국토부(국도), 행안부(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 ※ 하천 : 환경부(국가하천, 지방하천) 행안부(소하천)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피해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
 - ※ 하천 좌안, 우안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피해 입력 시 특히 주의

- 도로 침수 등으로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은 피해가 아님
- 관련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시설은 해당 부처 사전 협의 필요
- 인명피해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시까지 확정(자연재난 또는 안전사고)

◆ 조사기간

- 공공시설 : 재해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유시설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재해종료일 :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
-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 완료
- 해당 시·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는 효율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유시설 피해 추가 신고 시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특히, 사유시설은 현실적으로 피해 최종 보고기일까지 정밀조사가 어려우므로 민원이 없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기일까지 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
- 사유시설 피해조사 시 누락·과소가 없도록 피해주민 참여(이·통장 입회조사 실시)
- 공공시설 중 도로·하천·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시·군·구의 최초 보고 피해조사 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 추천 민간 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조치

◆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전산 보고

다. 재해대장 작성 요령

-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최종 보고 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사유시설 등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종이 대장을 작성할 수 있음
 - ※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항만시설은 지방해양항만청, 군사시설은 해당부대에서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사유시설은 기록 관리를 위해 대장 1부씩 작성하여 지방합동조사단 조사 후 시·군·구 자체보관하고, 시·도에는 시장·군수의 피해확인조사 제출로 같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출 필요 없음)

① 총괄현황 작성요령

-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원경을 촬영, 총괄현황에 첨부
-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구간(주 피해지역) “주 피해단면도” 작성
- 시설명, 시설구분(등급), 강우(강설)량, 피해위치, 피해일시, 피해원인 기록
- 피해당시 응급조치현황, 피해액, 복구비, 복구유형(기능복원, 개선복구), 복구효과, 과거피해현황을 기록

② 피해·복구내역 작성요령

- 피해 및 복구 단면도와 산출근거는 각각 해당란에 작성하되, 공종이 많을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③ 사진대지 작성요령

- 공중이 많을 경우 피해 및 복구 단면도의 순번에 따라 세부적으로 피해 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근경을 촬영하여 첨부(사진만으로 피해유무, 물량, 피해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피해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전산재해대장 등 모든 제출용 사진으로 활용하고 CD로 보관

○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시설별 피해 및 복구단면도에 의거 정확한 단위물량을 산출하고, 공중별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야 함

예) 옹벽: 물량(m)×단가=금액, 토공: 피해단면적×연장(m)×단가=금액

- 단가 적용 시에는 시설별 단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시설 단가 적용 시에 일반도로, 교량, 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재해대장 작성대상

- 사유시설: 주택, 농경지 유실·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 농림 및 수산부대시설 포함
- 공공시설: 전체
- 특히, 사유시설 중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 첨부(대장작성 안하여도 됨)

○ 개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은 별도 보고서 작성 제출(B4규격)

5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 지침

시·도 상황실 도착시

①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확인(조사단장)

- 시·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각종 자료 취합 내용 교육
 - 전산입력 담당 : 공공시설 조서입력(NDMS), 복구계획서 작성(NDMS)
 - 사유시설 집계, 취합 확인 담당(특히 재난지원금 취합·독려)
 - 보고서 작성용 자료 정리 담당(사진첩, 수범사례, 강우 분석 및 분포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복구 설명자료, 차트 등)

② 공공시설 조서 입력 여부 확인 및 내용 검토(행정안전부)

- 공공시설 조서입력 여부(진행상황)를 확인하여 미입력시 조치강구
- 조서출력표상(필드명 “도조사분”) 시설별, 시군별 피해물량, 피해금액 소계가 최종 보고된 전산 입력 피해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 피해액 5천만원 이상, 피해액 대비 복구비 2배 이상,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피해 시설별 List를 확인 현장조사 계획 수립(조사단장)

③ 피해액 5천만원 이하의 공공시설(시·도 위임) 조사 상황 확인 및 교육(조사단장)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 피해조사 완료와 동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필요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장 확인 가능)

현지 확인조사 및 피해복구액 확정시

① 현장 조사 시 피해 개소별 현장에서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을 확정, 시군 직원들에게 확인시킴(조사단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확인

② 재해대상상의 사진에 피해물량을 적서로 Inking하고, 복구공법, 공종, 주변 여건 등에 관하여 사진 주위 여백에 간단히 메모

※ 조사단장에게 보고 시 참고토록 함

③ 당일 현장 조사분은 피해·복구 물량 및 금액에 대해 당일 전산입력까지 완료 (조사단원)

○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필드명 “중앙조사”)에 피해 및 복구를 적색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지정된 사전 검토자에게 제출

○ 지정된 사전검토자는 전산입력 전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전산 담당자에게 제출

※ 전산 입력된 자료원부는 입력착오 확인을 위해 작업완료시까지 깨끗하게 보관

○ 입력된 공공시설 조서와 재해대상상의 확정 피해 및 복구와 건수, 입력 내용 등의 정확성을 Check(행정안전부 조사단원)

※ 특히 시설구분, 시설등급이 복구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및 시설별 소관부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었는지 확인 / 조서 입력 시 오탈자 및 표기방법에 주의

④ 사도 및 타 부처 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흡시 독려
(행정안전부 조사단원→사도 및 타부처 조사단원)

※ 사도 및 타부처 조사단의 현장조사 지연으로 피해·복구역 집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⑤ 하천 개선복구사업은 하천기본계획 확인, 시·군간 경계지점 등 상·하류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복구계획 수립

⑥ 개선복구계획지구는 반드시 조사단장에게 보고 후 반영하고 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보고시 상세 보고

⑦ 재난상황 관리 시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계획 수립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등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검토한 사항을 확인 후 반영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등 참고

현지 확인조사 후 집계 시

① 현장 조사 완료 후 사도 상황실에 귀청 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원들에게
담당업무 지정(조사단장)

○ 현장 조사 후 시도 상황실에 귀청 즉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원에
대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도에서 취합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집계
독려와 보고서 작성(행정안전부 조사단원)

※ 전산입력, 사유시설 취합, 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 개선복구조서, 기타 보고서용
각종 자료 등

- 행정안전부 업무 담당직원은 시·도의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문제점 및 자료취합 지연 시 대책 강구

※ 재난지원금 등의 취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②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의한 공공시설 조서 내용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등을 최종 확인(행정안전부 조사단원)

- 행정안전부 조사단원은 해당 시군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타부처 소관 및 5천만원이하 포함) 입력의 정확성 및 진행 상황을 최종 확정된 재해대장에 의거 확인

※ 타부처 또는 시·도(5천만원 이하) 조사단원이 최종 피해 및 복구 물량과 금액을 미확정 시에는 조속히 확정토록 독려

- 입력오류 및 재해대장상의 건수와 일치여부 확인

③ 타부처 및 시·도 조사단이 조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해대장에 대한 Spot Check(행정안전부 조사단원)

- 최종 입력된 조서자료에 의해 피해액 대비 복구비 비율이 과다한 경우, 개선복구 대상, 피해액 산정이 과다하게 산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 재해대장을 Check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수정 확정 후 적색으로 정정 표기

귀청시 지침물

- 공공시설 조서 출력자료, 복구계획서, 피해내역 총괄(확정분), 사진첩, 피해 현황지도, 미니 차트(가선복구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대상), 총괄보고서, 재해복구사업 예산확보 계획서(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제3호)

공공시설 조서 입력시 자주 발생하는 착오사례

- 피해공공시설
 - 소관부처 분류 착오
 - ⇒ 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행정안전부 시설인데 국토교통부로 입력
 - 시설등급 입력 착오
 - ⇒ 예) 도로·교량의 경우 국도, 군도 등으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군도28호선, 국도42호선, 세포선도로 등으로 잘못 입력
- 복구 계획서상 시설등급이 없는 것은 입력하지 말 것
 - 시설구분은 반드시 복구 Sheet상의 중분류 항목을 그대로 입력
 - 기타 ⇒ 특히 부처란의 기타와 소규모시설의 기타를 혼돈하고 있음
 - ⇒ 예) • 마을회관, 공동빨래터, 마을창고 등 새마을 시설물(소규모 시설 기타)
 - 기타 현충탑 등의 시설물 ⇒ 행정안전부 기타
- “기타”란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류할 경우 소관시설물의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판단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시 참고사항

① 공공시설 조서의 사도 조사분 물량 및 금액 검토(시설별, 시군별)

-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등급은 복구계획서작성시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시설물 소계물량이 그대로 이기될 수 있도록 명확히 분류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선복구계획수립요령 숙지

- 피해상황 집계표와 공공시설 조서출력표상의 피해물량, 금액을 대조·확인하여 수정·보완
- ② 사유시설 피해조사분의 물량, 금액 피해정도 검토(시설별, 시군별)
 - 사유시설의 피해 및 복구는 누락, 착오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물량과 피해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검증과 피해대비 복구물량 일치여부를 확인
- ③ 중앙조사결과 공공시설 조서작업은 반드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재난 대장 확인 후 조사단 요원이 직접 이기 작성 후 전산작업 실시
 - 공공시설 조서 작업표상의 물량단위는 복구계획서의 단위와 일치시킬 것
예) 도로·교량(m), 하천(m), 소규모시설(개소), 소화천(m)
 - 공공시설 조서 출력후 피해물량·금액, 복구물량·금액, 지원여부(지원, 자력)을 원본과 대조후 이상이 없을시 복구계획서 작성
 - 복구 Sheet 작업은 초안을 검토,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거 시설별, 규모별로 적정분류가 이루어졌는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반드시 확인 대조
 - 개선복구계획보고서와 재해대장을 최종 확인 대조
- ④ 피해액 대비 복구비 2배 이상 공공시설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재해대장을 지참, 현지 확인 후 조서 작업표상에 이기 작성
- ⑤ 재해대장과 공공시설 조서 출력표상의 피해물량 및 복구물량은 반드시 일치

6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폭염한파 제외

□ 정의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외 예시】

-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 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폭풍해일에 의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 되거나
-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 3시간 강우량이 60mm 미만인 때
- ▶ 12시간 강우량이 110mm 미만인 때
- ▶ 시우량이 30mm 이하인 때
- ▶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미만인 때
-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 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피해 제외 예시】

- ◆ 惡 기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등산로, 저지대 침수지역, 하상도로 등에 대하여 통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하는 사례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예시】

- ◆ 태풍, 낙뢰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탑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 태풍,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 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증거부족 인명피해 처리 결정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로 결정
- 단, 피해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연재해 여부 결정

○ 겨울철 대설 피해 기준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주택, 온실, 축사 등 구조물에 과재 적설 하중으로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강설,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전복 또는 추락한 교통사고
- 특보 시 도로 등산로 통제구간을 무리하게 진입, 피해를 입은 경우
-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위험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특보 시 시설물 붕괴원인이 현저한 부실 설계·시공으로 판명 난 경우
- 대설특보 해제 후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판명 난 경우

□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시·군·구 재난대책본부 → 중앙대책본부
 - 시·군·구재난대책본부장의 시·도재난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 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재난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피해발생 시·군·구에서는 사망·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역 관할 시·군·구재난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운영 관리

○ 최종보고 관리 강화

- 인명피해 보고서가 초동보고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시·군·구 재난대책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보고하도록 개선
 - 복구계획 수립 시 경찰서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추가확보 등으로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
 - 자연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나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된 경우
 - 초동보고 시 '실종자'로 보고하였으나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계획 수립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시·군·구 본부장의 확정사항을 검토 후 반영
- 단, 자체복구 계획 수립시에는 확정사항을 시도 본부장의 확인 후 반영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최종결재권자 명확화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사고 발생지경 시·군·구 재난부서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대책 본부장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제출할 것

*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서식 마련

- 초동보고는 재난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1)
- 최종보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조사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2)

붙임1 재난상황보고서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신: 접수일시:
시행일시: 발신: 인
제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1. 일시:
2. 도로명 주소: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붙임2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과-	결 재	주무관	○○○○ 담당	○○○○ 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보고일시	'00. 00. 00.						
공개여부							

'00. 00. 00.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0000. 00. 000

○○○지역대책본부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1 사고개요

- 인명피해: 사망 0명, 실종 0명, 부상* 0명
 -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후 00월 00일 퇴원
 -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중 00월 00일 사망
- 발생일시: 0000.00. 00. 00:00분
- 사고장소: ○○시 ○○읍 ○○리 00번지
- 사고자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 ○ (00세) 성 별:
- 주 소: ○○시(군) ○○읍(면) ○○리 00번지

<부상자>

- 성 명: ○ ○ ○ (00세) 성 별:
- 주 소: ○○시(군) ○○읍(면) ○○리 00번지

- 사고경위
 - 0000. 00. 00일 00:00경 며느리 ○○○와 식사 후 거동이 불편 하신 사망자 홀로 안방에서 쉬고 있던 중 00:00경 ○○군 ○○면 ○○리 000-00번지에서 지반이 붕괴되면서 000여톤의 토사가 주택 좌측을 덮쳐 질식사 한 것
 - ※ 주택부지와 전(田)의 높이차(5m)

○ 사고원인

- 사고지점은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강우 시에는 우수 등이 모여드는 형국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조성, 전(田)으로 관리하는 토지임
-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면에 내린 선행강우는 194mm이며 이중 **12시부터 14시까지** 내린 비가 139mm로써 시간당 평균강우량이 46mm이고, 특히 13:00~14:00 내린 강우량은 시간당 60mm 강우로 인하여 차밭의 지반이 포화상태에서 지속강우 등의 영향으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② 사고당시 기상상황

○ 기상특보

호우(태풍)주의보 발표*	호우(태풍)경보	해 제*
0.00일 00:00	0.00일 00:00	0.00일 00:00

* 증빙자료: 첨부3 호우특보 발표, 첨부4 호우특보 해제

○ 강우량*

구분	04:00~ 05:00	05:00~ 06:00	06:00~ 07:00	07:00~ 08:00	08:00~ 09:00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누적 (mm)	162.5	18	193	500	100	5	0	0	0.5	0.5	0.5	150.5
시간별 (mm)	14.5	6	17	13.5	2.5	0	0	0	0	0	0	19.5

* 증빙자료: 첨부5 강우현황

3] 사고현장의 특징

- 지형적 특성
 -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주변의 빗물 등이 모여드는 지형
 - 00년전 대나무밭을 '00.00월 차밭으로 지목 변경하여 조성된 토지임

4]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 인명피해(자연재해) 위험지역 지정(미지정) 지역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동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지정(미지정) 지역
 -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 의한 1:2 등급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 00.00 00:00: 호우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 00.00 00:00: 인명 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 00.00 00:00: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 00.00 00:00: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특별점검 지시 (실과 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 00.00 00:00: 산사태 관련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실시 여부
 - 피해지역은 사전 주민대피 대상 지역이 아님
-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

2022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1997. 6. 25. 초 판 발행	2011. 7. 5. 제16판 발행
1998. 6. 5. 제 2판 발행	2012. 7. 10. 제17판 발행
1999. 7. 26. 제 3판 발행	2013. 8. 6. 제18판 발행
2001. 7. 9. 제 5판 발행	2014. 8. 12. 제19판 발행
2002. 6. 10. 제 6판 발행	2015. 7. 10. 제20판 발행
2003. 7. 30. 제 7판 발행	2016. 10. 1. 제21판 발행
2004. 8. 17. 제 8판 발행	2017. 6. 30. 제22판 발행
2005. 6. 30. 제 9판 발행	2018. 8. 20. 제23판 발행
2006. 6. 20. 제10판 발행	2019. 8. 1. 제24판 발행
2007. 7. 4. 제11판 발행	2020. 7. 8. 제25판 발행
2007. 9. 20. 제12판 발행	2020. 12. 18. 제26판 발행
2008. 6. 18. 제13판 발행	2021. 6. 18. 제27판 발행
2009. 7. 14. 제14판 발행	2022. 6. 27. 제28판 발행
2010. 7. 5. 제15판 발행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5)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인 쇄 처 : 새롬출판 (02-2272-3662)

<비매품>